# 목 차

【 제1차 본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47

【 제2차 본회의 】

2.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 648

3. 199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54

4.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677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86

6.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691

【 제3차 본회의 】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697

8.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744

9.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83

【 제4차 본회의 】

10.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797

1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01

12. 평창군지역의료보호계획안 ——— 817

# 의 안 제 의 서

| 의안 번호 | 109 |
|---|---|

발의년월일 : 1996년 11월 21일
발 의 자 : 의 장 김 낙 운

## 1. 건 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 2. 제안이유

○ 1997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4. 주요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7명

- 이경진 의원, 유돈문 의원, 이상훈 의원, 이수현 의원, 김두경 의원, 우강호 의원, 김종영 의원

# '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 (안)

| 의안 번호 | 116 |
|---|---|

재출년월일 : '96. 12. 13.
재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안』을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함.

## 2. 주 요 골 자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한 『'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안』은 총 1건으로서, 용평보건지소 이전신축 1동 318㎡ 임.

## 3. 관 계 법 규 및 지 침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나. 평창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

# 총 괄 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분 | | | 합계 | | | 당초 및 1차 의결 분 | | | 금차분 | |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취득 | 계 | 토지 | 2 | 28,016 | 272,293 | 2 | 28,016 | 272,293 | | | |
| | | 건물 | 4 | 5,205 | 2,642,836 | 3 | 4,887 | 2,322,235 | 1 | 318 | 320,601 |
| | | 기타 | | | | | | | | | |
| | 1) 매입 | 토지 | 1 | 15,907 | 269,093 | 1 | 15,907 | 269,093 | | | |
| | | 건물 | 4 | 5,205 | 2,642,836 | 3 | 4,887 | 2,322,235 | 1 | 318 | 320,601 |
| | | 기타 | | | | | | | | | |
| | 2) 교환취득 | 토지 | 1 | 12,109 | 3,200 | 1 | 12,109 | 3,200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3) 기타취득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처분 | 계 | 토지 | 1 | 8,132 | 2,500 | 1 | 8,132 | 2,500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4) 매각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5) 교환처분 | 토지 | 1 | 8,132 | 2,500 | 1 | 8,132 | 2,500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대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96년도 2차 취득재산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재산외표시 | | | 추정가액(천원) | 취득시기 | 취득 사유 |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계 | 토지<br>건물<br>기타 | 1 건 | 318 | 320,601 | | | |
| 1 | 건물 | 용평,장평리<br>380번지 | 318 | 320,601 | '97년도<br>상 반 기 | 용평보건지소<br>이전 신축 | 평 창 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표

1. 관계법규(초)

2. 취득재산(건물신축) 위치도

3. '9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 계 법 규 (초)

## ○ 지 방 자 치 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6. 重要財産의 취득·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管理 및 處分

## ○ 지 방 재 정 법

(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개정 95·5·16, 96·4·27>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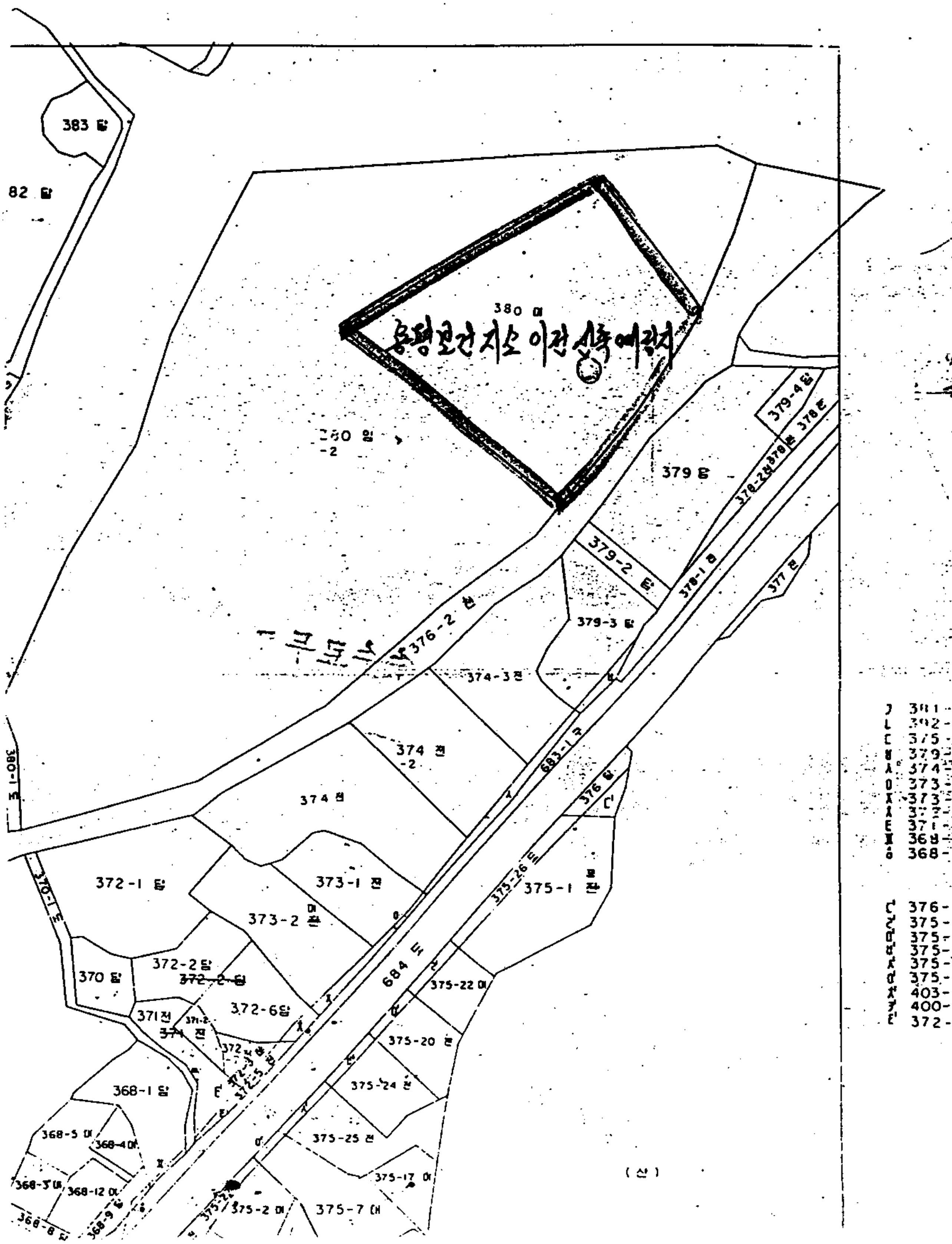
383 답
82 답
380 대
용평보건지소 이전 신축예정지
380 임
-2
379 답
379-4 답
379-2 답
379-3 답
377 전
376-2 천
374-3 전
374 전
-2
374 전
683-1 구
376 답
372-1 답
373-1 전
373-2 전
375-1 전
375-26 도
370 답
372-2 답
684 도
375-22 대
371 전
372-6 답
375-20 전
368-1 답
375-24 전
368-5 대
375-25 전
368-12 대
375-17 대
(산)
375-2 대
375-7 대

# '9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안)

| 의안 번호 | 112 |
|---|---|

제출년월일 : '96.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내무부로 부터 시달 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함.

## 2. 주 요 골 자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9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5건 38,830㎡로서, 교환취득 3건 18,243㎡와 교환처분 2건에 20,587㎡ 임.

교환취득 3건중 토지 2건은 구 경찰서부지 1필지 4,775㎡와 군유림 집단화 1필지 12,496㎡이며, 건물 1건은 구 경찰서 건물 6동 972㎡ 임.

교환처분 2건중 1건은 경찰서신축편입부지 17필지 15,063㎡와 1건은 군유림 집단화에 따른 군유토지 처분 1필지 5,524㎡ 임.

## 3. 관 계 법 규 및 지 침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나. 평창군공유재산조례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

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 총 괄 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분 | | | 합계 | | | '97년도 당초 계획 | | | 비고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득 | 계 | 토지 | 2 | 17,271 | 1,015,148 | 2 | 17,271 | 1,015,148 | |
| | | 건물 | 1 | 972 | 121,339 | 1 | 972 | 121,339 | |
| | | 기타 | | | | | | | |
| | 1) 매입 | 토지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 2) 교환취득 | 토지 | 2 | 17,271 | 1,015,148 | 2 | 17,271 | 1,015,148 | |
| | | 건물 | 1 | 972 | 121,339 | 1 | 972 | 121,339 | |
| | | 기타 | | | | | | | |
| | 3) 기타취득 | 토지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처분 | 계 | 토지 | 2 | 20,587 | 890,227 | 2 | 20,587 | 890,227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 4) 매각 | 토지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 5) 교환처분 | 토지 | 2 | 20,587 | 890,227 | 2 | 20,587 | 890,227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대부 | 토지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기타 | | | | | | | | |

# '97년도 교환(취득)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번호 | 재산외표시 | | | 추정가액 | 취득 | 취득사유 | 취득재산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천원) | 시기 | | 소유자 |
| 계 | 토지<br>건물<br>계 | 2건 2필지<br>1건 6동<br>3건 | 17,271<br>972<br>18,243 | 1,015,148<br>121,339<br>1,136,487 | | | |
| 1 | 대지<br>(1) | 평창읍하리<br>113-1 | 4,775 | 1,010,800 | 하반기 | 경찰서신축부지 (평창군소유)와교환 | (국)경찰청 |
| 2 | 사무실<br>(1) | 평창읍하리<br>113-1 | 208 | 29,858 | " | 상 동 | (국)경찰청 |
| | 판사<br>(2) | 평창읍하리<br>113-1 | 88 | 6,248 | " | 상 동 | (국)경찰청 |
| | 사무실<br>(3) | 평창읍하리<br>113-1 | 507 | 72,571 | " | 상 동 | (국)경찰청 |
| | 창고<br>(4) | 평창읍하리<br>113-1 | 40 | 1,956 | " | 상 동 | (국)경찰청 |
| | 차고<br>(5) | 평창읍하리<br>113-1 | 82 | 3,980 | " | 상 동 | (국)경찰청 |
| | 무기고<br>(6) | 평창읍하리<br>113-1 | 47 | 6,726 | " | 상 동 | (국)경찰청 |
| 3 | 임<br>(1) | 도암 유천리<br>산 429 | 12,496 | 4,348 | " | 군유림 집단화 | 도암, 횡계<br>이 춘 자 |

# '97년도 교환(처분)재산목록(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번호 | 재산외표시 | | | 추정가액 | 처분시기 | 처분사유 | 처분재산 소유자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천원) | | | |
| 계 | 토지 | 2건 17필지 | 20,587 | 890,227 | | | |
| 1 | 답 (1) | 평창읍하리 219-3 | 151 | 8,380 | 하반기 | 현경찰서부지(경찰청 소유)와 교환 | 평창군수 |
| | 답 (2) | 평창읍하리 219-4 | 2,644 | 149,742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3) | 평창읍하리 220-4 | 1,004 | 56,669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4) | 평창읍하리 220-5 | 1,147 | 76,849 | " | 상 동 (평창하리김형수) 취득협의중 | |
| | 전 (5) | 평창읍하리 229 | 297 | 17,374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6) | 평창읍하리 230 | 571 | 38,542 | " | 상 동 | 평창군수 |
| | 답 (7) | 평창읍하리 234 | 584 | 39,420 | " | 상 동 | 평창군수 |
| | 답 (8) | 평창읍하리 235-2 | 969 | 53,779 | " | 상 동 | 평창군수 |
| | 답 (9) | 평창읍하리 235-4 | 2,506 | 141,589 | " | 상 동 | 평창군수 |
| | 답 (10) | 평창읍하리 235-6 | 1,226 | 68,043 | " | 상 동 | 평창군수 |
| | 답 (11) | 평창읍하리 235-16 | 568 | 33,228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12) | 평창읍하리 236-1 | 579 | 30,976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13) | 평창읍하리 236-3 | 232 | 12,412 | " | 상 동 | 평창군수 |
| | 전 (14) | 평창읍하리 237-3 | 1,518 | 81,213 | " | 상 동 | 평창군수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번호 | 재산의 표시 | | | 추정가액 (천원) | 처분 시기 | 처분 사유 | 처분 재산 소유자 |
|---|---|---|---|---|---|---|---|
| | 지목 | 소재지 | 수량 | | | | |
| | 전 (15) | 평창읍하리 240-6 | 406 | 21,828 | 하반기 | 현경찰서부지(경찰청 소유)와 교환 | 평창군수 |
| | 구거 (16) | 평창읍하리 435-17 | 659 | 32,950 | " | 상 동 | 농수산부 (교환협의중) |
| 2 | 전 (1) | 도암 유천리 482-6 | 5,524 | 27,233 | " | 군유임야 집단화 | 평창군수 |

# '9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부표

1. 관계법규(초)

2. 취득재산별 위치도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 작성기준

# 1. 관 계 법 규 ( 초 )

## ○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6. 重要財産의 취득 · 處分
7. 公共施設의 設置 · 管理 및 處分

## ○ 지방재정법

(법)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法令과 條例規定에 따라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 · 管理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 교환 취득 재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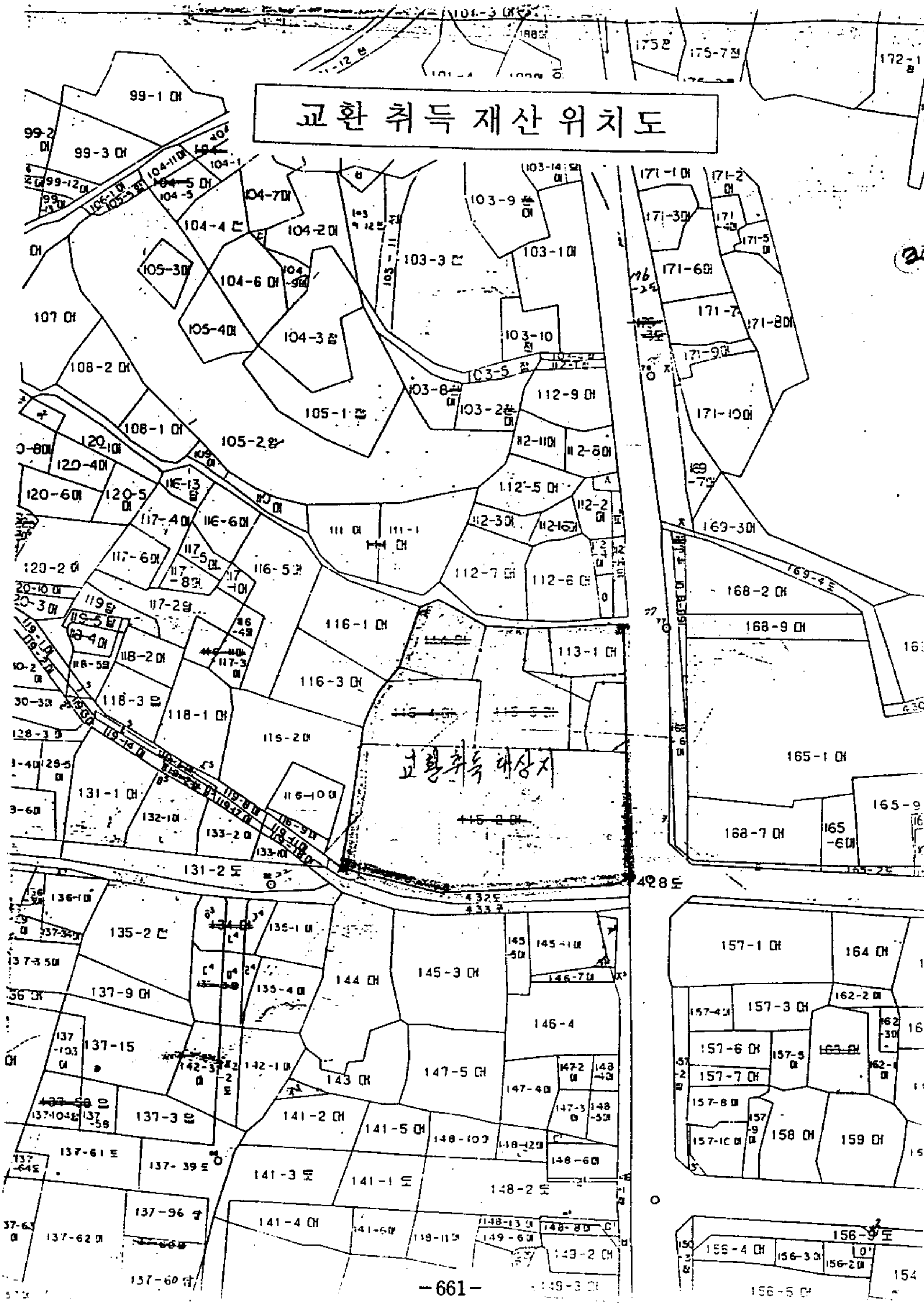
교환취득 대상지
115-2 대
131-2 도
428 도
99-1 대
99-3 대
104-4 전
104-2 대
104-6 대
104-3 잡
105-1 잡
105-2 잡
105-4 대
105-3 대
107 대
108-2 대
108-1 대
103-3 전
103-1 대
103-9 전
103-10 전
103-5 잡
103-8 전
103-2 전
112-9 대
112-5 대
112-7 대
112-6 대
113-1 대
116-1 대
116-3 대
116-5 대
116-6 대
118-1 대
118-2 대
118-3 은
131-1 대
133-2 대
135-2 전
137-9 대
137-3 은
144 대
145-3 대
146-4
147-5 대
143 대
141-2 대
141-5 대
141-3 도
141-1 도
141-4 대
148-2 도
157-1 대
164 대
157-3 대
157-6 대
157-7 대
158 대
159 대
165-1 대
168-7 대
168-2 대
168-9 대
169-3 대
171-6 대
171-10 대
175-7 전
156-4 대
156-9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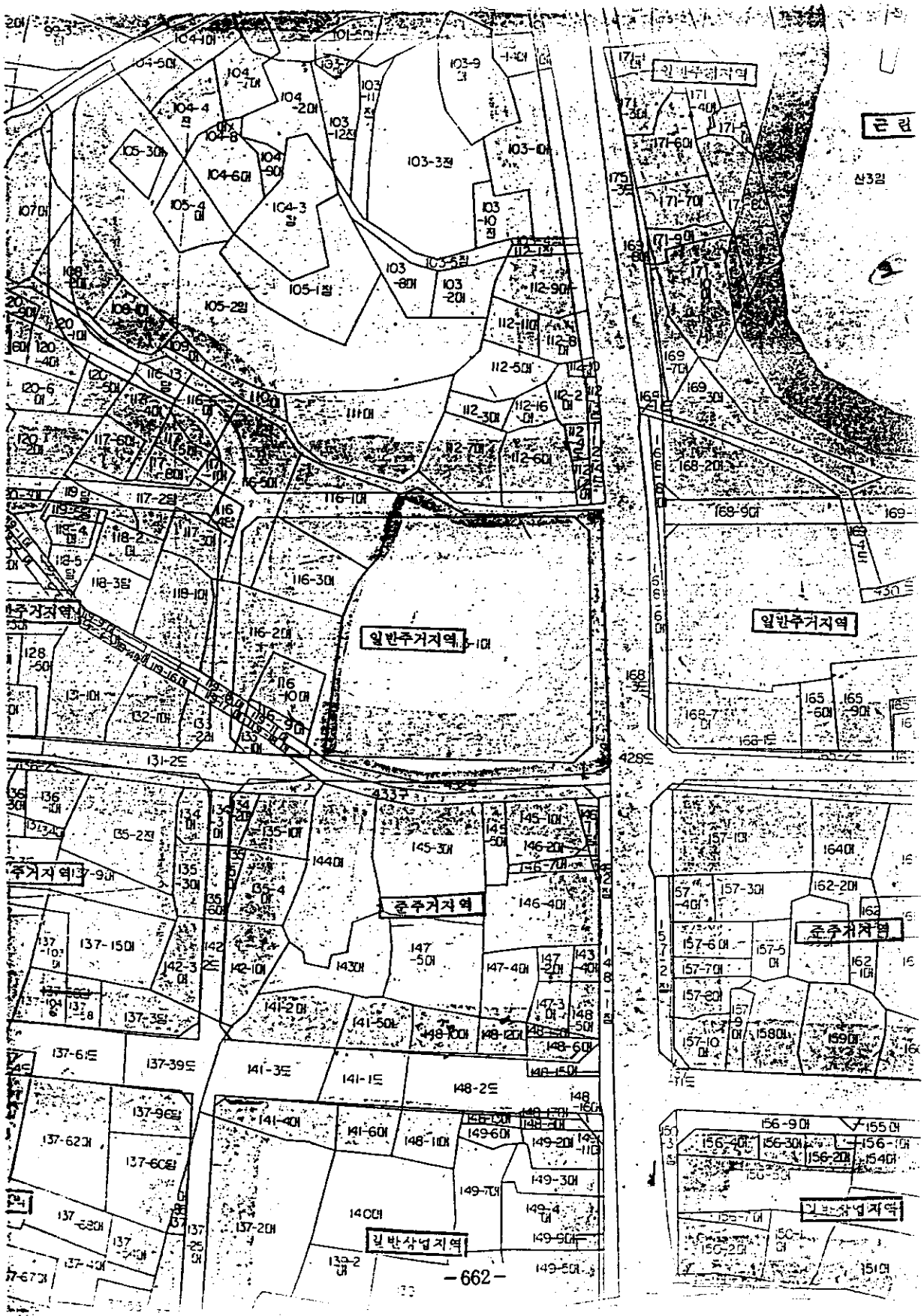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
433구
428도

# 교환 처분 재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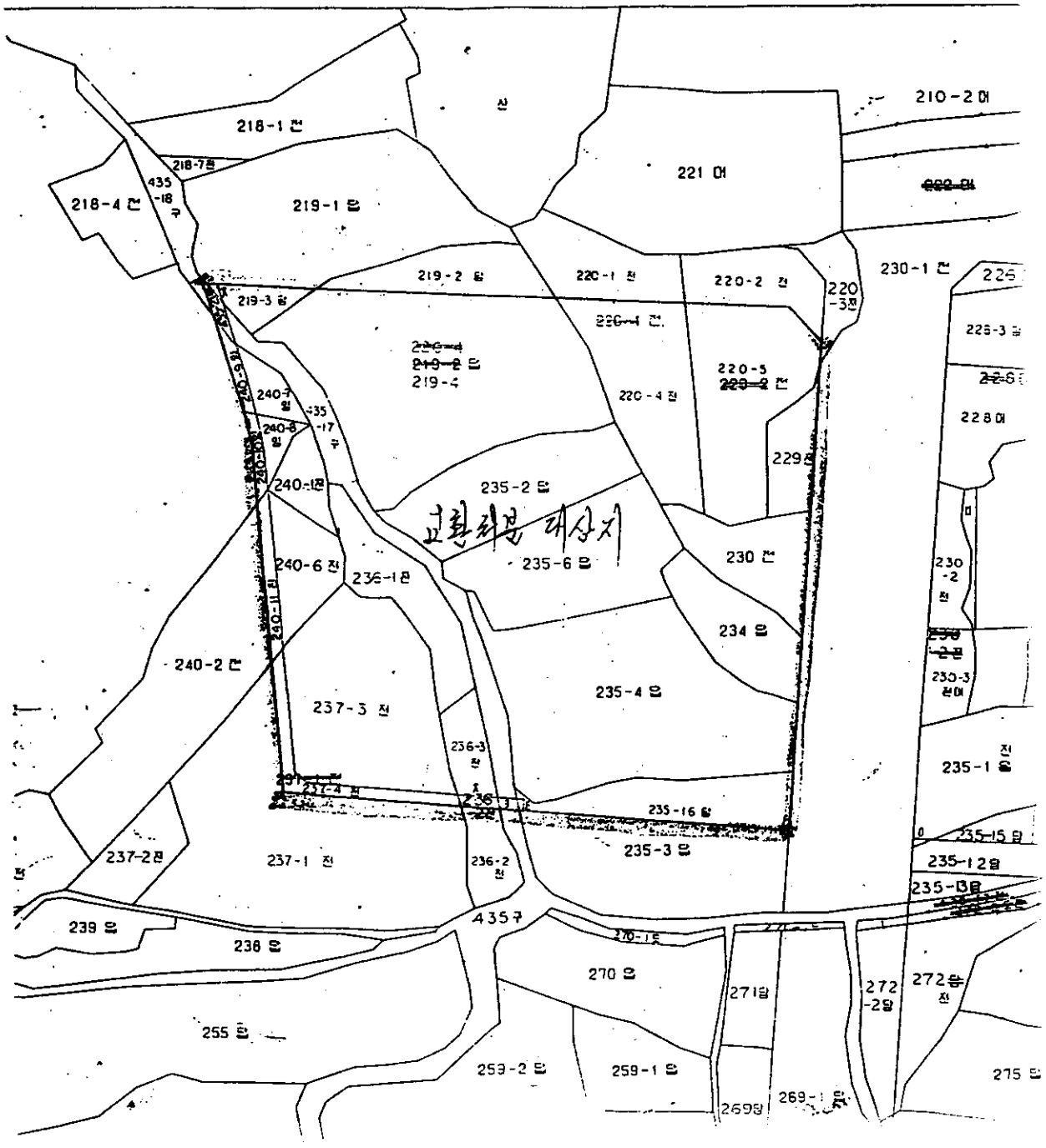
218-1 전
218-7 답
435-18 구
218-4 전
219-1 답
219-2 답
219-3 답
220-1 전
220-2 전
220-3 전
221 대
210-2 대
230-1 전
225
225-3 답
228 대
229 답
220-4 전
220-5
229-2 전
240-7 답
240-8 답
435-17 구
240-1 전
235-2 답
교환처분 대상지
235-6 답
240-6 전
236-1 전
230 전
230-2 전
234 답
230-3 분여
240-2 전
237-3 전
235-4 답
236-3 전
235-1 답
235-16 답
235-15 답
235-12 답
235-13 답
237-2 전
237-1 전
236-2 전
235-3 답
435 구
239 답
238 답
270 답
271 답
272-2 답
272 등 전
255 답
259-2 답
259-1 답
269 답
275 답

# 計劃地籍閱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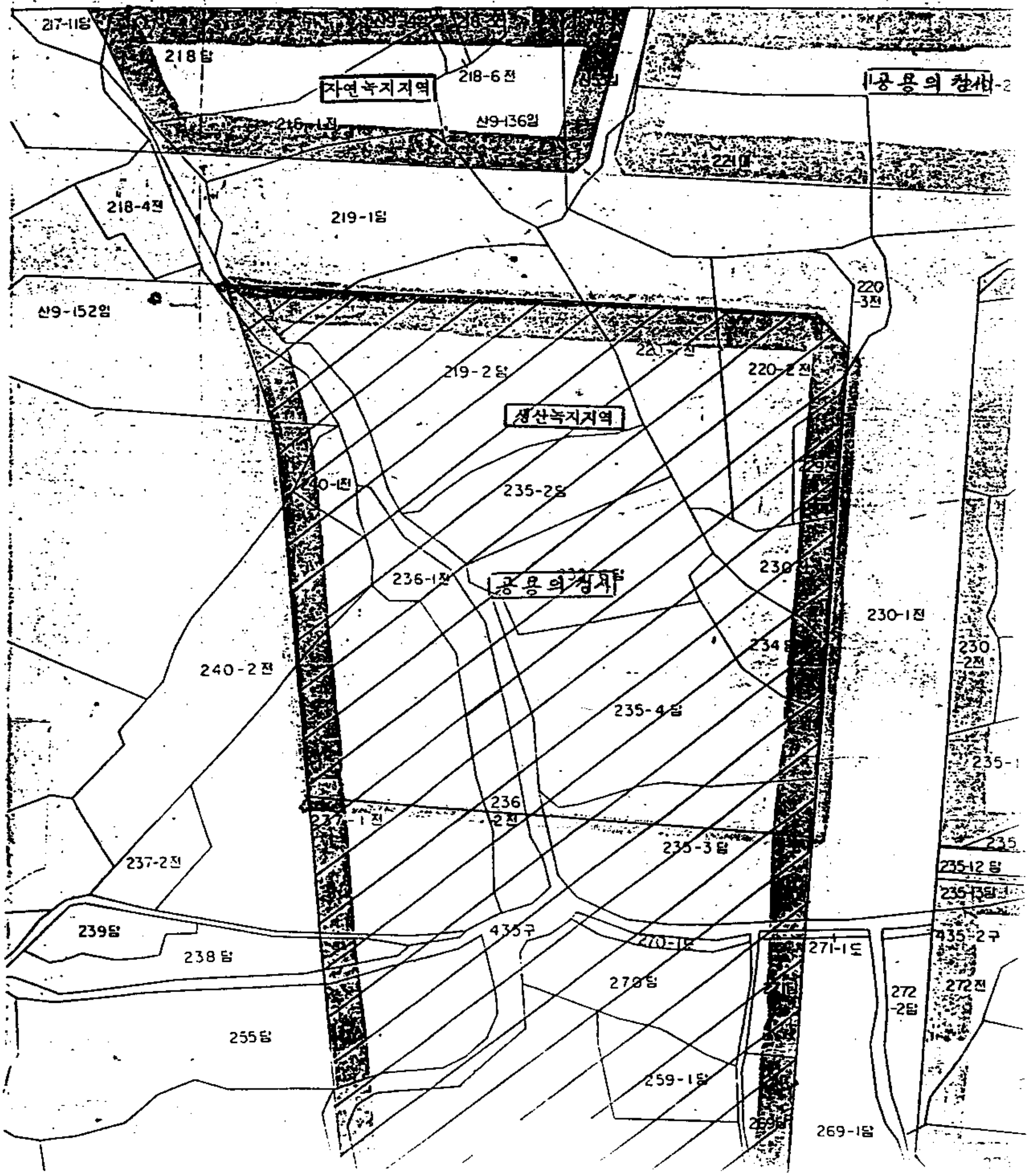
217-11답
218답
218-6전
자연녹지지역
산9-136임
공용의 청사
218-4전
219-1답
산9-152임
220
-3전
219-2답
220-2전
생산녹지지역
235-2답
236-1전
공용의 청사
230-1전
234답
240-2전
235-4답
236
-2전
237-1전
235-3답
237-2전
239답
238답
435구
271-1도
435-2구
270답
272
-2답
272전
255답
259-1답
269-1답

# 군유임야집단화 재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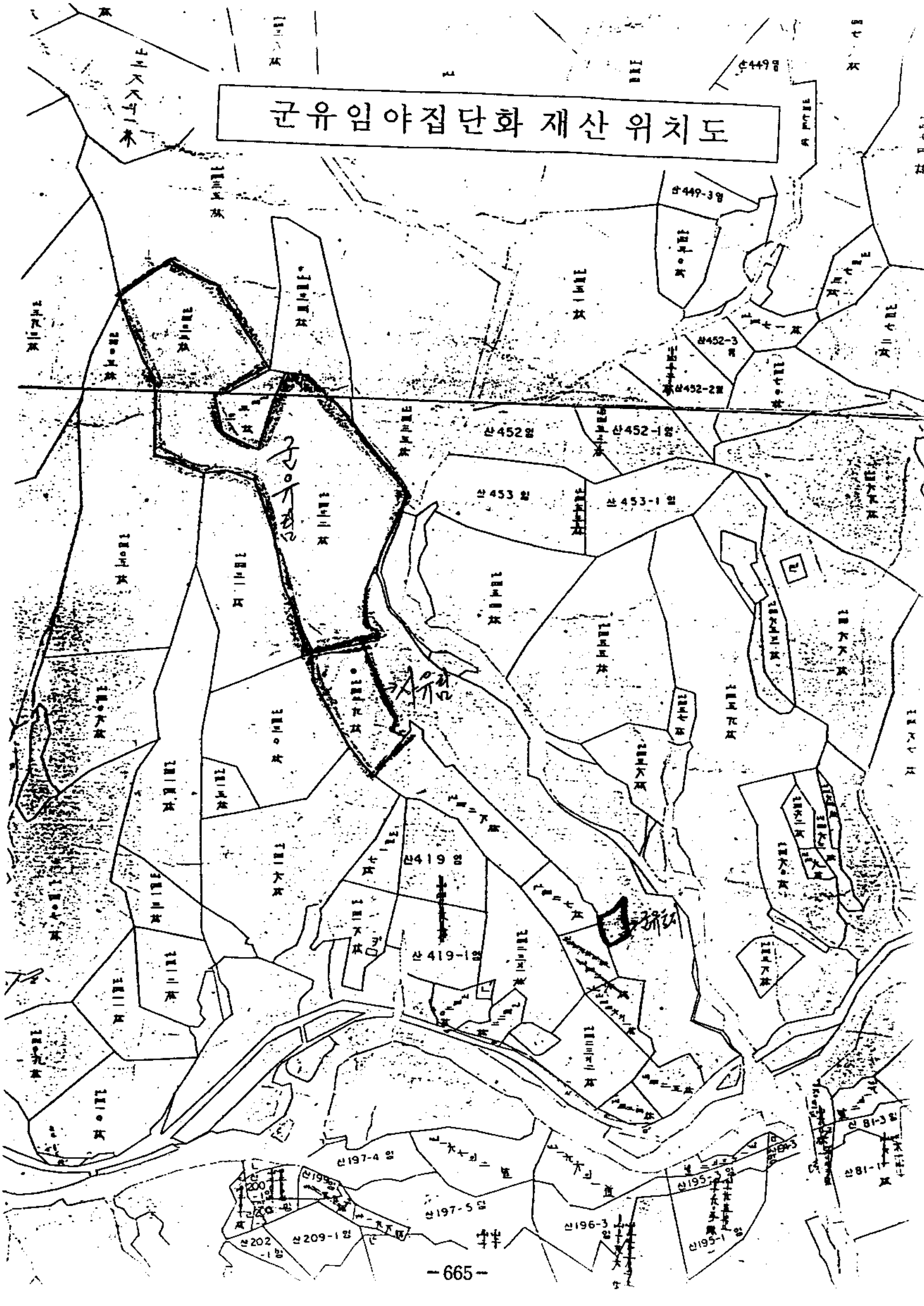

1997년도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내 무 부

# 목 차

1. 목 적

2. 기 본 방 향

3. 대 상 재 산

4. 재산의 취득기준

5. 재산의 처분기준

가. 재산의 처분요건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2)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4) 매각의 제한

가. 재산의 교환기준

라. 재산의 양여기준

6. 행 정 사 항

##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처분결과의 보고범위·서식등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본방향

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은 종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한다.

나. 장래 행정수요 및 국민복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보존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등 처분을 억제하여 공유재산으로 존치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행정·보존 및 복지수요 예상지역의 재산취득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다. 재산의 매각은 그 규모·위치·형태·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보존부적합한 영세한 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한다.

라. 매각요건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매각하기보다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재산과 교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산의 매각을 최소화 한다.

## 3. 대상재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등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다만,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착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재산의 취득기준

가. '97년도에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코자 하는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예정지로서 공공청사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5. 재산의 처분기준

### 가. 재산의 처분요건

(1)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양여, 멸실, 교환등을 하는 때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지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타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시이의의 지역(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②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③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④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의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의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등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가) ①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공유재산 이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면적이 본항 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① 은닉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그 재산의 최종 선의취득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등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소유토지상의 건물 및 이 계획에 의거 매각하는 공유토지상에 위치한 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

②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

③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하천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가) 지방재정법과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의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 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등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산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재산

④ 농어촌정비법 제93조 또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⑥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재산

(나) 제1항 각호의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및 공공용,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산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시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예정지중 공유지 면적이 취락택지면적의 20%미만인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의 재산

⑤ 법원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판결된 재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등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우

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여 매각 [필지당 면적이(인접한 필지 포함) 기준이상 면적일 경우 기준이내로 분할매각이 불가하고 장래 행정수요를 위하여 보존]

㉮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업진흥구역 : 10,000㎡이하 (특별시·광역시·시의 등 지역은 제외)

· 농업보호구역 : 1,320㎡이하

· 기 타 : 660㎡이하

㉯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지역 : 660㎡이하

· 시 의 동 지 역 : 1,320㎡이하

· 시·군 의 읍면지역 : 3,300㎡이하

다만,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 상기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음

㉰ 농경지 및 폐천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경우의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 '95.12.31 이전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은자가 하천법 제23조에 의거 하천공사를 하여 국가로부터 시·도에 양여된 재산(하천부지를 간척, 개간등에 의하여 농지가 조성된 후 국가로부터 시·도에 양여된 재산으로서 당해 농지를 조성한 자에게 대부한 경우의 재산 포함)

㉲ 농경지 및 폐천부지를 매입한 자가 향후 10년간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는등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재산

(나) 농업·주택·공업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 육성을 위하여 전체면적중 공유지면적이 20%범위내에서 포함되는 경우

②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아파트지구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시이의 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공유지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그 배후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100㎡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장근로자에게 보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육아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동재산은 매각후 10년이상 기속사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매각의 제한
위에 열거한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③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④ 특정목적(조림, 목축, 초지조성, 골프장용도등)으로 대부한 재산을 수대부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는 경우

다. 재산의 교환기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인 토지·건물·기타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이외의 토지·건물·기타토지의 정착물을 상당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전항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 (예 : 토지와 토지간, 건물과 건물간)의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하며,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교환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

(나)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관리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점유중인 재산의 정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가) 사권이 설정된 재산

(나) 도시계획법, 도로법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나) 장래에 도로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 '97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의안 번호 | /// |
|---|---|

제안년월일 : 1996. 11.

제 안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 사유

봉평면 지역개발에 따른 급수 수요충족 및 농촌지역의 급수량 증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하므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함.

## 2. 주요 골자

□ 지방채 차입계획

<특 별 회 계>

○ 사 업 명 : 봉평상수도시설확장사업

○ 기채 규모 : 일십억원 (₩1,000,000,000)

○ 기 채 선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기채 종류 : 증서차입

○ 발행 시기 : '97. 5

○ 이 율 : 7%

○ 상환 기간 :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상환 재원 : 군 비

# 3.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5조(지방채무및채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봉평상수도시설확장사업

## □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소재지 및 배후도시의 개발에 따른 "물" 수요량 급증

○ 위생수 공급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기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봉평면, 용평면 일원 (창동,면온,무이,원길,장평,백옥포리)

○ 사 업 량 : Q = 8,700톤/일 ('97계획량 : 취.정수시설 1식)

○ 총 사업비 : 7,600백만원 ('97투자액 : 1,250백만원)

○ 총사업기간 : '95. 12 ~ '98. 12

## □ 사업추진 계획

○ 추진현황 ('96까지)

(단위 : 백만원)

| 공 종 별 | 주 요 공 사 | 사 업 비 |
|---|---|---|
| 취수시설 | ㅇ 도수관로 D400m/m, L = 280m | 3,150 |
| 정수시설 | ㅇ 정수장토공1식, 옹벽84m, 착수정1지, 침전지2지 | |
| 송배수시설 | ㅇ 배수지1지, 관로 15.4km | |
| 전기시설 | ㅇ 전기 및 계장설비 1식 | |

○ '97 추진계획

. 사업비 : 1,250백만원

. 사업량 ┌ 취수시설 : 집수매거200m, 접합정5기,
　　　　└ 정수시설 : 여과지3지

. 사업기간 : '97. 5 ~ '97. 12

○ 지방채 상환재원 : 군 비

## □ 공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 기 투 자 | | '97 계 획 | | '98 계 획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 업 량 | 사업비 | 사 업 량 | 사업비 | 사 업 량 | 사업비 |
| 취수시설 | 1식 | 7,600 | 도수관로 280m | 3,150 | 집수매거 200m 접합정5기 | 1,250 | 관리사1동 펌프장1식 | 3,200 |
| 정수시설 | 1식 | | 부지조성 토공 1식 착수정1지 침전지2지 | | 여과지3지 | | 관리사1동 투약실1동 | |
| 송배수시설 | 1식 | | 배수지1지 관로15.4 km | | | | | |
| 기 타 | 전기설비등 | | 전기설비 | | | | 계장설비 1식 | |

## □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95 | '96 | '97 | '98 |
|---|---|---|---|---|---|
| 계 | 7,600 | 1,900 | 1,250 | 1,250 | 3,200 |
| 국 도 비 | 500 | | | | 500 |
| 군 비 | 1,950 | | 250 | | 1,700 |
| 지 방 채 | 3,000 | | 1,000 | 1,000 | 1,000 |
| 기 타 | 2,150 | 1,900 | | 250 | |

* 기타내역 : (주) 보광 부담금

## □ 사업효과

○ 급수수요에 대처하므로써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발전 가속화

○ 위생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기여

○ 봉평. 용평상수도 통합운영으로 관리비 절감 및 양질의 상수원 확보

모사전송

# 강 원 도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산1번지 /전화 (0361) 57-5054 / 담 당 윤 창 호

문서번호 : 예산 41600 - 554

시행일자 : 1996. 12. 23 ( 년)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기획 · 감사실장

| 선결 | 군수 | | 지시 | | |
|---|---|---|---|---|---|
| 접수 | 일자 시각 | | 결재 · 공람 | 부군수 | |
| | 번호 | 1271 | | 실장 | |
| 처리과 | | 기획감사실 | | 계장 | |
| 담당자 | | | | | |

도시과장 상하수도계장

제 목 : '97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1. 귀 시군 및 실과에서 신청한 '97지방채 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채발행 및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앞으로 지방채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자금관리의 합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현지점검할 계획이니 지방채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97지방채 발행계획 집행지침. 1부.

2. '97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내역. 1부. 끝.

96. 11. 23

# 강 원 도 지 사

수신처 : 거(05, 14, 22, 29), 다(01~11, 13, 17~18)

# '97地方債 發行計劃 執行承認

## □ '97豫算編成

○ '97 당초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내용을 반영

## □ '97年度中 地方債管理

○ 모든 지방채사업은 집행결정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상환능력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토록하고,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정밀분석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

○ 중앙부처 관리자금중 '97년도 자치단체별 세부집행계획이 미확정된 자금의 지방채발행은 관계부처의 확정통지에 따라 추가발행 승인을 얻은후 집행

○ 연도중 추가신청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98년도 정기계획에 반영추진

○ 지방채 발행 차입자금은 목적이외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당해 사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투자적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는 상환조건에 불구하고 수입금으로 조기 상환 토록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등 채무액의 증가 억제로 건전재정 유지

# □ '97地方債 承認 內譯

(단위:백만원)

| 단체명 | 회계 | 사 업 명 | 승인액 | 기 채 선 | 조 건 |
|---|---|---|---|---|---|
| 도 | 一般 | o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조정) | 12,000 | 민간자금 (강원은행) | 3년거치 5년상환 (연 9%) |
| | " | o 중소기업 특별지원 (북평공단) | 4,300 | 민간자금 (제일은행) | 3년거치 5년상환 (연 9%) |
| | | o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 3,400 | 민간자금 (제일은행) | 3년거치 5년상환 (연 9%) |
| | 公特 | o 지역개발공채 발행 | 66,000 | 민간자금 (농협) | 5년거치 일시상환 (연 6%) |
| 춘천시 | 公特 | o 중소도시 (신북읍) 상수도사업 | 1,630 | 환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 3%) |
| 원주시 | 一般 | o 중평동사무소 신축 | 200 | 청사정비 (공제회) | 2년거치 10년상환 (연 3%) |
| | " | o 우산동사무소 신축 | 200 | 청사정비 (공제회) | 2년거치 10년상환 (연 3%) |
| | 公特 | o '97 맑은물공급 종합 대책사업 | 886 | 재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6.1%) |
| | " | o 제2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 4,398 | 재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6.1%) |
| 강릉시 | 一般 | o 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 | 2,0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 (연 8%) |
| | " | o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 1,250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부) | 3년거치 7년상환 (연 3%) |
| | " | o 강릉하수종말처리장 | 2,0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 (연 7%) |
| | " | o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 1,5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 (연 7%) |
| | 公特 | o 홍제정수장확장사업 | 3,378 | 재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 3%) |
| 동해시 | 一般 | o 폐기물 종합단지건설 | 5,0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 (연 8%) |
| | | o 공설묘지 조성사업 | 2,0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 (연 8%) |
| | 公特 | o 쇄운정수장확장공사 | 3,000 | 환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 3%) |
| | " | o 옥계 송수관로 교체 | 4,734 | 재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6.1%) |
| 태백시 | 公特 | o 맑은물공급대책사업 | 235 | 재특자금 (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 (연6.1%) |
| | | | 400 |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 (연 7%) |

(단위:백만원)

| 단체명 | 회계 | 시 업 명 | 승인액 | 기 채 선 | 조 건 |
|---|---|---|---|---|---|
| 속초시 | 公特 | o 속초시 도문동 쌍천 취수원개발사업 | 3,062 | 환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 3%) |
| | 〃 | o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 5,0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연 8%) |
| | | o 속초시노후관개량사업 | 504 | 재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6.1%) |
| 삼척시 | 一般 | o 강원도민체전유치 체육시설 확충 | 2,0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연 8%) |
| | | o 하수종말처리장 | 1,0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 公特 | o 상수도취수장및가압장 이전 확장공사 | 3,0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홍천군 | 一般 | o 홍천하수종말처리장 | 1,076 | 환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 5%) |
| | 公特 | o 홍천읍상수도시설확장 | 5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 | o 화촌면 〃 | 5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 | o 님 면 〃 | 4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 | o 내 면 〃 | 25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영월군 | 一般 | o 영월군 의회청사 신축 | 300 | 청사정비(공제회) | 2년거치 10년상환(연 3%) |
| | 〃 | o 서면 청사신축 | 300 | 청사정비(공제회) | 2년거치 10년상환(연 3%) |
| 평창군 | 公他 | o 봉평 상수도시설확장 | 1,0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2년거치 10년상환(연 7%) |
| | | o 도암상수도시설확장 | 1,200 | 환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 3%) |
| | | | 5,000 | 재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6.1%) |
| 철원군 | 公特 | o 김화상수도이전 확장 공사 사업 | 1,494 | 환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 3%) |
| | | o 동송상수도개량 및 노후관개 | 534 | 재특자금(환경부) | 5년거치 10년상환(연6.1%) |
| 양양군 | 一般 | o 물치 주차장 조성 | 5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연 8%) |
| | 〃 | o 기사문항 해변 주차장 조성 | 3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연 8%) |
| | 〃 | o 히왕도리 택지조성 | 300 | 지역개발기금(강원도) | 3년거치 5년상환(연 8%) |

# 〈 未承認 事業 調書 〉

(단위:백만원)

| 단 체 별 | 사 업 명 | 신 청 액 | 불 승 인 사 유 |
|---|---|---|---|
| 강 원 도 | o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 10,000 | 재원조달대책 재검토 |
| 춘 천 시 | o 하수관거 정비사업 | 500 | 환경부 융자불가 통보 |
| 원 주 시 | o 시청사 건립 | 5,500 | 부지 미확보로 '98년 재검토 |
| 강 릉 시 | o 강릉시 청사신축 | 1,500 | 부지 미확보로 '98년 재검토 |
| 홍 천 군 | o 하수관거 개보수 | 663 | 환경부 융자불가 통보 |
| 횡 성 군 | o 공근 학담지구 문화마을 조성 | 3,000 | 농림부 융자불가 통보 |
| 철 원 군 | o 주상복합건물 신축 | 2,000 | 사업비 전액 지방채로 재원대책 재검토 |
| | o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 | 2,500 | 투자심사 미이행 |
| 고 성 군 | o 봉포리 택지조성 사업 | 1,500 | 사업비 전액 지방채로 재원대책 재검토 |
| | o 수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 4,000 | 사업비 전액 지방채로 재원대책 재검토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19 |
|---|---|

제출년월일 : 1996.12. 1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한시정원인 군수 정책보좌관 정원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으나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총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 정원을 '97. 1. 1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내무과 4급(지방서기관) 1인 삭감(안 제2조 제1호)

나.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국가직정원 39인(농촌지도관 3, 농촌지도사 32인, 생활지도사 4인) 지방직화 (안제2조 제3호)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236"을 "235"로, 제3호중 "96"을 "135"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본 청 : 236 인<br>2. 의회사무과 : 11 인<br>3. 직속기관 : 96 인<br>4. 사 업 소 : 8 인<br>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237 인 | 제2조 _____<br>_____<br>_____.<br>1. 본 청 : 235 인<br>2. (현행과 같음)<br>3. 직속기관 : 135 인<br>4. (현행과 같음)<br>5. (현행과 같음) |

| 송신번호 | 6526 | | 11:3 |
|---|---|---|---|
| 수신자 번호 | 411 | 수신자 | |
| 송신자 번호 | 411 | 서명날인 | 강 |

"살맛나는 강원건설"

# 강 원 도

모사전송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 / (0361)54-2011-2223, 2228 / 전송 담당 최영규

문서번호 자치 12200-1614

시행일자 1996. 12. 14 (0부)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 선결 | 군수 | | 지시 | |
|---|---|---|---|---|
| 접수 | 일자 시간 | 1996. 12. 14 | 결재·공람 | 부군수 |
| | 번호 | 13515 | | 과장 |
| 처리과 | | 내무과 | | 계장 |
| 담당자 | | 김남국 | | |

제목 '97국가직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 1. 1자로 마무리되는 자치단체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관련자치법 개정·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계획 1부.

2. 정원승인서 1부.  끝.

# 강 원 도 지 사

자치행정과장 전결

수신처 : 더

| 기관별 | 당초 (국가직) | | | 조정 (지방직) | | | 비고 |
|---|---|---|---|---|---|---|---|
| | 직명 | 급류 | 승인인원 | 직명 | 급류 | 승인인원 | |
| 영월군 농촌지도소 | 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지방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o 농촌지도소장 |
| | 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지방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o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
| | 농촌지도사 | 6급상당 | △31명 | 지방농촌지도사 | 6급상당 | 31명 | |
| | 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지방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
| | 소계 | | △38명 | | | 38명 | |
| 평창군 농촌지도소 | 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지방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o 농촌지도소장 |
| | 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지방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o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
| | 농촌지도사 | 6급상당 | △32명 | 지방농촌지도사 | 6급상당 | 32명 | |
| | 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지방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
| | 소계 | | △39명 | | | 39명 | |
| 정선군 농촌지도소 | 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지방농촌지도관 | 4급상당 | 1명 | o 농촌지도소장 |
| | 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지방농촌지도관 | 5급상당 | 2명 | o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
| | 농촌지도사 | 6급상당 | △26명 | 지방농촌지도사 | 6급상당 | 26명 | |
| | 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지방생활지도사 | 6급상당 | 4명 | |
| | 소계 | | △33명 | | | 33명 | |

#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의 안 번 호 | 118 |
|---|---|

제출년월일 : 1996. 12. 1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관련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 2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군수의 자문

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안 제5조)

## 3. 관련근거법령

○ 지역보건법(1996. 7. 1 시행)

○ 지역보건법시행령

#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발췌서

## □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996年度 ——

#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2. 감 사 기 간 : '96. 11. 25 ~ 11. 30 (6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나. 하부행정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편성

ㅇ 위원장 : 우강호 의원 ㅇ 간 사 : 김두경 의원

ㅇ 위 원 : 이경진, 유돈문, 이상훈, 이수현, 김종영 의원

ㅇ 사무보조 : 전문위원 신교선 외 4명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 감 사 일 시 | 대 상 기 관 | 감사장소 | 비 고 |
|---|---|---|---|
| '96. 11. 25<br>(월) 14:00 | ○ 기획감사실<br>민원봉사실 | 군 청<br>대회의실 | |
| '96. 11. 26<br>(화) 10:00 | ○ 내무과, 재무과<br>지역개발과<br>관광문화과 | 〃 | |
| '96. 11. 27<br>(수) 10:00 | ○ 지적과, 복지과<br>환경보호과<br>보건의료원 | 〃 | |
| '96. 11. 28<br>(목) 10:00 | ○ 상공과, 축산과<br>산림과, 건설과 | 〃 | |
| '96. 11. 29<br>(금) 10:00 | ○ 도시과, 농정과<br>민방위재난관리과<br>농촌지도소 | 〃 | |
| '96. 11. 30<br>(토) 11:00 | ○ 위생환경사업소<br>강 평 | 〃 | |

## 다. 감사방법

1) 방 법 :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

2) 감사진행

-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위원별로 검토
- 감사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 소관별로 부서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
- 감사위원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답변후 필요부분은 별도 자료 제출요구 함.
- 감사사항별로 결과를 면밀히 분석 시정·처리·건의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

## 5. 주요감사실시 내용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기획감사실<br>(30) | 1.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br>(부의안건명, 일자, 내용, 결과등)<br>2. 국제교류협력업무추진 계획대 실적<br>(지방자치단체 평창군 방문현황)<br>3.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br>4. '95. '96각종사업 성과분석<br>5. 투자우선순위 사업내용과 추진실적<br>6.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보상 및 국,도비 지원현황<br>7. 군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내역<br>8. 각 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지원현황<br>('95, '96년도분)<br>9. '95. '96년도 도암면장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br>10. 지방양여금중 군도 정비사업 투자 현황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1.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등 평창군 채무부담행위 현황<br>12. '94. '95실과소별 불용액 내역<br>13.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14.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내용<br>15. '95년 결산결과 사고이월현황<br>16. '95. '96국,도비 지원요청액 대 실지지원현황<br>17. 예산확보를 위해 도, 중앙부처와 섭외한 내용과 성과<br>18. '96. 현재 일용직 고용현황<br>19. 채무현황<br>20. 차입금 상환 현황 및 실적<br>21. 국,도비년차별 보조내시 금액<br>22. 지방채 현황('95 ~ '96)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23. 군정홍보 특집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95 ~ '96)<br>24. '96간행물 발간 내역과 열람실적<br>25. 군수의 신문, 방송과의 대담, 특집 기사 건수 및 내용<br>26.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홍보내용 비교<br>27. '96년도 감사시 신분, 재정상 조치 내용과 사유 및 유형별 주요원인, 금후 예방대책<br>28. 공무원의 비위조사 현황<br>29. 공무원 소청현황<br>30. '96평창군 행정소송내용 및 결과 | |
| 민원봉사실 (12) | 1. '96 민원1회방문처리 사항의 종합 관리 현황<br>2. 민원봉사실 신축에 앞선 선진지 견학 내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3.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및 연구 실적<br>4. 일반여권 발급 현황('95. '96)<br>5.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쇄신관련 군민 편의시책 개발실적<br>6.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br>7. 고충민원(진정, 건의)접수처리현황<br>8. 가로등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br>9.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 및 관리실태<br>10.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내역<br>11. '96민원사무처리대장 처리실태<br>12. 민원사무처리사항(불허, 반려, 취하) | |
| 내 무 과<br>( 21 ) | 1. 각 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지원현황 ('95, '96)<br>2. 축산과장, 건설과장 직위해제에 대한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행정 조치사항<br>3. 군수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br>4. 평창군 기능직공무원 등급별 현황<br>5. '95, '96공무원 해외연수 실적<br>6. '96반상회운영 관련한 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br>7.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관련하여 복무 단속내용과 보안대책<br>8.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9. '95, '96각종 위원회 현황<br>10. '96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변화된 기획감사실 및 공보계 업무<br>11. 반상회 지도점검 확인결과 복명내용 사본<br>12. 군수의 경조사 참여건수와 경조비 내역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3.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및 실적<br>14. 행정장비(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전환, 폐기실적<br>15. 승진연한 경과자 내역(7급이상)<br>16. 조직진단 결과 군조직 개편전과 개편후의 효과분석 및 결과<br>17. 읍면지역 출장소 현황<br>18.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집행내역<br>19. 우수전문인력 채용확대에 대한 실적<br>20. 반상회 건의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95, '96)<br>21. 기술직공무원 현황 | |
| 재 무 과<br>( 27 ) | 1.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br>2. 관내 별장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br>3. 군금고 및 각종기금 예치현황 ('95. 1 ~ 현재)<br>4. '95, '96국공유지, 체비지 처분내용 및 취득실적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5. '96 지방세 징수현황, 미수현황 및 처리방안<br>6. 관내 대기업의 지방세부과 징수실적, 징수근거<br>7. 신설된 세무조사계의 세원조사 실적<br>8. 법인세무조사 내용 및 실적<br>9. '95, '96은닉세원 및 재산발굴 실적<br>10. 세외수입 징수실적<br>11. '95, '96국도비 보조금중 미착금내역<br>12. 국,군유지 임대 불하현황<br>13.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14. 본청 발주공사 계약현황<br>15. '95, '96각종사업 용역비 현황과 용역후 미집행 현황<br>16. '96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지급된 사례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7. '95사고이월 사업중 '95. 12월에 계약된 사업<br>18. '96사고이월 예정사업<br>19.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br>20. '95, '96각종사업 입찰잔액 사용내역<br>21. '95, '96고액지방세 부과업체 및 체납현황<br>22. '95, '96군의 세수내역과 재정자립도 현황<br>23. 비과세 및 감면대상과 세액현황 ('95, '96)<br>24. 지방세 및 세외수입중 결손처분사항<br>25.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br>26. '96각종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br>27. '95, '96부실채권 현황과 향후대책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지역개발과<br>( 13 ) | 1. 군, 읍면 발주공사의 설계자, 지도감독 공무원현황과 지도감독 실적<br>2. 읍면별 사회단체 현황<br>3.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br>4. 관내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br>5. 읍면별 복지회관건립 및 부대시설 투자현황과 사용실적<br>6. 비사업부서 설계용역납품 검토실적<br>7. 민선군수 지시사항 내용과 이행결과<br>8.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시책<br>9.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정특수시책 내용과 성과<br>10.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자료수집 분석 실적<br>11. 새마을금고, 금고지원 및 육성사업비 세부집행 내역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2. 범죄없는마을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br>13. 경영소득사업에 관한사항 및 실적 | |
| 관광문화과<br>( 25 ) | 1. 문예진흥기금 지원 및 집행내역<br>2. 생활체육협의회지원 육성현황<br>3. '96 노성제 예산집행현황<br>4. 도민체전출전 예산집행내역<br>5. 비지정관광지 운영실적<br>6.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br>7. 직장체육부 운영<br>8. 관광이용시설의 설치현황 및 지도 육성 실적<br>9. 문화재관리 현황, 지방문화예술육성 및 발굴현황<br>10.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1. '96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사업 현황<br>12. '95, '96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비 정산내역<br>13. 관광업체 등록현황 및 단체현황<br>14. 효율적인 각종 축제관리계획과 예산지원 현황<br>15. 관광관련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유치활동 추진상황<br>16.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계획<br>17. 평창군의 관광홍보를 위한 특수시책<br>18. 대관령관광특구 관련 내용<br>19. 군내 유적지등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br>20. 공공체육시설현황<br>21.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인적사항 현황<br>22. 대관정 궁도장 관계서류 사본일체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23. 노성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처리 사항<br>24. 군내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에 관한 사항<br>25. 사찰인허가에 대한 사항 | |
| 지 적 과<br>( 7 ) | 1. 부동산중개업소 현황<br>2. 지적측량대행법인 관리현황<br>3. 지적관련 장비보유 및 관리실태<br>4.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br>5. 부동산실명제추진상황<br>6.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br>7. 개발이익환수금 실적 | |
| 복 지 과<br>( 31 ) | 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 융자내역, 미회수액('92~'95)내역과 대책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2.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 및 향후 계획<br>3. 불우청소년 보호내용 및 선도대책 현황<br>4.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노인에 대한 취로사업 실적및 노임지급 현황('95, '96)<br>5. 군수공약사항 추진 현황<br>6. '96노인회관 지원내역<br>7. 위생업소단속실적 및 조치결과<br>8.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현황<br>9. 공설묘지조성사업비 지출내역 및 공사추진현황<br>10.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 현황<br>11.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12. '96사고이월예정사업 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3. '95, '96 채권부채 현황<br>14.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운영 실적<br>15.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접수내역('95, '96)및 성금품 집행내역<br>16. 장애인 취업현황 및 공무원 취업현황<br>17. 장애인관련 행사 및 지원단체 보조 현황<br>18. 병,의원 의료보험료 부당청구 현황<br>19.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관리실태<br>20. 사회복지기금 지원내역<br>21. 재해구호물자 현황 및 관리실태<br>22. 병,의원별 의료보호진료 보험료 미지급 현황<br>23. 노인장수식당 운영현황 및 확대방안 사업비 집행내역<br>24. '96 불우노인 현황 및 대책과 수당 지급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25. 노인회관(경로당) 현황과 '97신설계획<br>26. 노인의 날 행사내용 및 예산지원현황<br>27. 장의업 현황 및 운영실태<br>28. 건강보조식품, 야시장, 이동의류할인점등 지역상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업자들의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br>29. 구호물자 수해의연금 물건별 기탁자 명단과 지급내용<br>30. 청소년 육성 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적<br>31. 불량식품단속 현황 및 실적 | |
| 환경보호과<br>( 18 ) | 1. 각 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지원현황 ('95, '96)<br>2. 일반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및 대책, 단속실적<br>3. 공해배출업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4.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현황 및 지도단속실적<br>5. 농촌종합오수처리시설현황 및 관리현황<br>6. 대화산업개발비산먼지발생 및 오수처리에 대한 단속내용, 단속결과,처리사항<br>7. 환경보호 및 홍보계도실적<br>8.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9.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br>10. '95, '96년 각종사업 입찰잔액 사용내역<br>11. '96관내 허가관련시설 영향평가 현황<br>12.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문제점 및대책<br>13. 환경분야투자관련 사업추진 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4. 먹는샘물제조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내역 및 군재정기여도 평가내용<br>15. 양식장(송어장)수질조사 현황<br>16.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및 시책현황<br>17. 건축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단속실적 처리결과<br>18. 환경오염감시를 위한 보상제도 운영 실적 및 현황 | |
| 농 정 과<br>( 25 ) | 1. 쌀 전업농 운영지원금 현황<br>2. 대도시 직판장 보조금 지원현황<br>3. 직판장 운영실태<br>4.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내역<br>5. 농지전용허가 건수 및 면적<br>6. 농산물개발 대체작목 개발현황<br>7.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8. 1,000만원 이상 사업 보조금 정산서 내용<br>9.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실적현황<br>10. 영농기계화 추진사업 농기계반값공급 현황<br>11. 농민에게 이득이되는 행정계획<br>12. 특용작물 및 원예작물 증산장려 실적<br>13.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현황<br>14. 50평이상 유통시설현황<br>15.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내역<br>16.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지원 현황<br>17. '96전업농가 육성현황<br>18. 관광휴양지개발(관광농원) 현황<br>19. 부정농약 및 비료판매업 지도단속 현황<br>20. 농기계보관창고 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21. 농산물저온저장고 현황<br>22.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br>23. 농산물 가공산업 현황<br>24. 농작물 재해발생 현황<br>25. 농산물 유통체제 현황 및 가격조사 현황 | |
| 상 공 과 | 1. 각 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지원현황<br>2. 주차장현황 및 관리실태<br>3. 관내 광산개발허가 현황<br>4. 비수익 노선현황 및 보상금지원내역<br>5. 차종별 등록현황<br>6.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현황<br>7. '95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8. '95, '96년도 1,000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사본 | |

| 소관별 |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고 |
| --- | --- | --- |
| | 9.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br>10. 외국산담배 추방과 관련한 홍보실적<br>11.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현황(회사별, 읍면별)<br>12. 택시회사별 배정대비 실질 운행차량수(회사별)<br>13. 자동차등록시 차량번호 특혜부여<br>14. 관내생산업체 제품 팔아주기 추진 실적<br>15. 지역경제진단 및 대책<br>16. 건강보조식품, 야시장, 이동의류할인점등 지역상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업자들의 단속현황 및 조치내용<br>17.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일체 ('95, '96)<br>18. 가스안전점검 관련한 행정지도실적 및 관리사항<br>19.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내용 및 | |

| 소관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실적<br>20. 물가조사 및 정찰제실시에 관한사항 (해당증빙서)<br>21.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
| 축 산 과 ( 19 ) | 1. '95년 젖소경쟁력 사업추진중 발생된 봉평면 평촌리 곽희중씨 축사철거 추진현황(지원대책 및 법적문제포함)<br>2. 대화양돈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관계문서 수발대장 및 내용<br>3. '96축산자금 보조금 및 융자내역과 체납액 현황(개인별, 단지별, '96년도분은 별도작성)<br>4. 대화면 개수리(황골) 초지조성 허가내용 및 관계서류<br>5. 대화양돈단지조성사업 신청인 명단 및 변경사항 현황<br>6. 대화양돈단지 조성사업장 농지매입 현황 및 농지전용허가 현황<br>7. 대화면 번영회가 제출한 반대민원 | |

| 소관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접수현황 및 내용<br>8. 국변산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내용<br>9. 하안미1리 주민들이 제기한 수맥에 관하여 조사의뢰한 내용<br>10. 그밖의 대화양돈장 허가신청에 관계된 서류일체<br>11.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12. '95결산결과 사고이월 현황(사업명, 당초예산, 이월액, 이월사유): '96 처리결과<br>13.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br>14. '95, '96년 1,000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사본<br>15. 등급판정시설 지원 및 군세수 증대 현황, 축산농가 수익증대 현황<br>16. 수의사 현황 및 공수의 수당지급내역 및 업무실적(교육포함) | |

| 소관별 |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고 |
|---|---|---|
| | 17. 축산물 유통 및 단속실적<br>18.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 지원내역 및 시공업체 인적사항('95, '96)<br>19. 초지조성현황 및 사후관리(소유자, 주소, 면적, 운영상황등) | |
| 산림과 ( 19 ) | 1.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 및 관리실태<br>2. '96 산림병충해 방제실적 및'97계획<br>3. 돌배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예산집행 내역)과 양묘사업추진현황<br>4. 양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과 '97년 조림사업 추진계획<br>5. 산림관련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건별로 인적사항 및 면적, 사유등)<br>6. 대화산업개발 불법골재 반출 관련하여 폐석사용료 관련<br>- 폐석사용료 징수금액<br>- 폐석량 산출근거<br>- 추징료 징수에 관계된 서류사본일체<br>7. 대화산업개발의 산림훼손허가 부분에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대한 중간복구 지시 및 처리결과 (사본첨부)<br>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금 내역<br>9. '95년 '96년조림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br>10. 임도시설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 (읍면별)<br>11. 국,군유지 임대 불하현황<br>12. 오대개발허가 관련 서류 사본일체 (3차연기서류)및 불법야적장 처리 문제, 중간복구명령 공문사본일체<br>13. 간평연립(사원주택)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처리결과<br>14. 상월오개리 임도시설의 사후관리로 야계사방사업의 미집행사유 임도시설 복구 총소요사업비 정산서 내용<br>15. 임도시설 부실공사 재시공 여부<br>16. 산화경방요원 현황 및 보수지급 내역<br>17. 임산물가공업체 현황 및 사업비 지원 | |

| 소관별 |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고 |
|---|---|---|
| | 내역(보조, 융자포함)<br>18.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피해목벌채 면적 및 보조금지원 내역('95, '96대비)<br>19. 방림면 계촌6리 경지정리 채토장허가 및 복구현황 | |
| 건설과 ( 21 ) | 1.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확포장 추진현황과 향후대책<br>2. 관내 송어장 유수인용허가량 및 연장 내역<br>3.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br>4. '95년 호우 및 태풍(제니스)피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8,300만원 지출내역<br>5. '96관내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현황 및 사유<br>6. '96골재채취 허가사항 및 사용료징수 현황과 사후 수급계획<br>7. 재산리 밭기반 정비사업 투자내역<br>8. 하안미경지정리사업 투자계획서 사본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및 투자내역<br>9. '96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내역<br>10. '95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br>11. '96년도 사업중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br>12. 위험교량 순위와 사업비 예정액 및 개보수 현황<br>13. 오대천 고수부지 용역현황 및 작업 진척도<br>14. '96국토이용계획 변경현황<br>15.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현황<br>16. 도로점용허가 읍,면별 현황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br>17. '95, '96방제업무 실적<br>18. 수해지역 민원발생현황 및 피해보상 현황<br>19. 지하수개발허가 및 내용 | |

| 소관별 |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고 |
|---|---|---|
| | 20. 횡계2리 소교량 공사내용<br>21. 유동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
| 도시과<br>( 21 ) | 1. 봉평도읍정비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br>2. 미탄, 방림(산나물,찰옥수수)가공 공장 및 저온저장고 입찰현황 및 투자내역과 향후 전망, 위치선정에 대한 부적정 사유<br>3. 오지개발사업 총사업계획과 투자현황<br>4. 평창읍 상수도 '92~'96년간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부실시공된 공사비 내역(161,047,800)과 감사원 감사사본 포함한 일체의 내용<br>5. 방림면 계촌3리 조귀원 건축허가사항 내용(축사)<br>6. '96간이상수도 현황 및 투자금액과 유지관리 현황<br>7.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대책(읍면별)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8. '95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br>9. '96년도 사업중 10월말까지 미집행된 사업현황<br>10. '95, '96년 각종사업 입찰사용잔액 내역<br>11. '95, '96각종사업 성과분석 현황 및 (분기별,연간)문제점사업 추진상황<br>12. '95, '96년1,000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내용<br>13.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영실적<br>14. 상수원 보호구역내 건축물허가현황 (읍면별 '95, '96)<br>15. 송정택지개발의 문제점, 분양현황 및 미분양택지 분양계획<br>16. 읍면별 도시계획 수립현황과 상,하수도계획 수립현황<br>17. '94~'96신축건물중 준공검사 미필된 건축물 입주현황 및 임시사용 승인현황과 미준공 사유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18.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4~'96) 읍면별 현황<br>- 선정기준, 사업내역 및 사업비내역<br>사업시행방법(도급, 주민직영)<br>19. 평창상수도 재시공 경비부담각서 및 단속실적<br>20. 농촌주거환경개선 추진(읍면별 '95, '96) 실적<br>21. 옥외광고물(불법광고물)관리 현황 | |
| 민방위재난 관리과 ( 10 ) | 1. 민방위시설장비 현황 및 활용계획<br>2. 교량,터널, 대형건축물등 위험판정 시설물 관리 현황<br>3.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현황<br>4. 안전진단 장비현황<br>5. 재해등으로 인한 민방위대 동원실적<br>6. 주민신고망 조직현황과 운영실적<br>7. 민방위강사현황 및 강의실적<br>8. 민방위시설장비 현황 및 문제점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9. 민방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고발 및 과태료 납부현황<br>10. 위험대상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 | |
| 보건의료원<br>( 15 ) | 1.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br>2. 각사회단체 및 타기관 예산지원현황<br>3. 금고 및 각종기금 예치현황<br>4.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복무단속 실적<br>5. 관내 보건지소 근무요원 근무현황 및 복무단속 실적<br>6. 약종상(약국, 약방)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현황 및 단속실적<br>7.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8. '96년 의료기기 신규구입 및 교체 현황<br>9. 이동방문진료실적 및 활성화대책 | |

| 소관별 | 주요감사실시내용 | 비고 |
|---|---|---|
| | 10. 의료원 의약품재고 및 폐기의약품 현황<br>11. 각종 예방주사예산 및 실시현황<br>12. 의료원 의약품 구입현황<br>13. 의료원의 의약품 납품업체명, 업체 선정방법, 납품종류 및 납품방법<br>1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집행 현황<br>15. 농어촌이동의료원 의료인력 및 동원 장비, 의약품현황 | |
| 농촌지도소 ( 13 ) | 1. 고추냉이 시험재배 투자내역 및 운영 실태<br>2. '96농기계순회수리 실적(일자별순회 내용등)<br>3. '96 두메농산 지원내역<br>4.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br>5. '95, '96년 각종사업 성과분석 현황 | |

| 소 관 별 |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 비 고 |
|---|---|---|
| | 6. '95, '96년 1,000만원이상 보조사업 정산서 사본<br>7. 농업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95, '96)<br>8. 농가 주거환경 개선실적(읍면별,'95 '96)<br>9. 군 4 - H연합회 야영대회 경비지출 내역<br>10.4개학습단체 관련 제1회 농업인의날 행사 경비 지출내역<br>11.감자요리 개발실적<br>12.생활개선용품 현실적 사용여부<br>13.거문리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사업 내역 | |

##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군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이나 특정한 목적을 두고 구성한 각종 위원회가 명목상 구성만 되었거나 또는 운영조례를 제정치 않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는 체계적인 행정운영의 미흡으로 판단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이나 폐지, 운영 활성화로 위원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임.

2. 열악한 군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하고 엄정하게 행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변동사유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요구되는 사례는 건전한 예산운영에 역행하는 결과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하여야 할 단체는 명시화되어 있음에도 정액보조대상 외의 단체에게 체육대회, 하계수련 등의 명목으로 매년 정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조지원하는 것은 유사 보조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4. 주요사업 투자심사 시에는 시급을 요하거나 재원의 확보대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순위를 결정하였음에도 시행 과정에서 임의로 사업발주 순위가 바뀌는 등 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는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당위성이 충족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5. 자치단체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와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함은 물론, 예산을 계상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여 가용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급증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개선노력이 촉구됨.

6. 동일한 민원사항이 불허·반려 등 되풀이되는 사례는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전달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동일 사례에 대하여는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관련규정을 인지시키는 등 민원업무처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7. 반상회보는 군정의 추진상황, 홍보, 안내 등 주민에게 행정의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임에도 자율적인 반상회 개최에 따라 반상회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니 향후 전달기능을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전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8. 각종 군정추진 사업의 심사분석은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야 함에도 매분기 마다 형식적이고 개괄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9. 장래 하자책임 불분명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평창상수도 사업의 계약사례는 수의계약 평점기준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상수도 공사의 감사원 감사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재시공 명령을 받은 업체에게 인접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함.

10. 각종 사업은 시행에 앞서 사전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함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는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갖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로서 개선이 요구됨.

11. 관내 송어양식장에서 설치 가동 중인 방지시설에 폐기물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업주들이 처리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수거 처리치 않고 방치함에 따라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임.

12. 경계측량 신청시 인접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첨부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의서로 갈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적공사에서 민원서류(동의서)를 과잉요구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13.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92년에 착수되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초계획의 5%에 불과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마다 수백 기의 묘지가 임야에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을 완공을 서둘러야 할 것임.

14. 장애인 복지를 위한 행정추진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 채용, 취업알선 등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의 폭 확대와 행·재정지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15. 하천변 방목에 따른 축산폐수로 하천이 심하게 오염됨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방목주들이 스스로의 위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되며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임.

16.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들의 출근지연, 잡담 등 근무기강 해이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서 근복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17.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사전 수급계획을 철저히 판단하여 적정한 물량을 구입 사용토록하고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진료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된 것은 예산낭비와 체계적인 의약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로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18. 최근 외지의 건강식품 판매상인들이 관내 지역에 이동판매장을 설치하여 놓고 마치 몸에 좋은 약품인양 지역주민의 물품구매 충동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는 지역내 상거래 질서를 혼란시키고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임.

19.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찰가격 판매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미비한 결과라고 사료되며 행정기관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임.

20. 각종 사업은 사전 지역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화 양돈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그동안 지역주민의 수차례에 걸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강행하여 주민의 집단반발과 행정 불신을 야기시킨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부적절한 사례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1. 진부면 오대개발(주)에게 '89. 12. 26 토석채취허가 후 3차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하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중간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대화면 대화산업개발 역시 중간복구 없이 계속 연장허가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에서 기인된 사례로서 적절한 복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2. 행정감사 수감시 감사자료 내용이 개괄적으로 작성되어 보충자료를 받는 등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며 감사위원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해마다 거듭되는 무소신, 임기응변 식의 불성실한 답변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23.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편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보조금이 편중 지원된 사례는 주민들의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4.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사례로서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업집행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이 요구됨.

25. 축산농가의 초지관리 실태가 미흡하여 부실초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만 하여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사례로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건의사항

1. 종합민원실이 완공되면 전문민원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민원 1회방문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민봉사행정 개선 방안 연구

2. 지역사회안정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야식비, 연료비, 전기료 등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 도모 요구됨

3.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없다고 되돌아 가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어 업무의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민원업무도 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강화

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담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대책 강구

5. 보건의료원이 평창읍에 소재하고 있어 진부, 도암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주민편의 차원에서 진료기관의 확충방안 강구

6. 담배판매업소의 허가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어 민원인은 물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경향을 띠고있어 허가처리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강구

7. 현행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이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

8. 지역현안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의 지연 및 미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니 각종 보조금 내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추진의 교류로 재원의 조기 확보대책 강구

9. 매년 청소년의 자아발전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개최되는 4-H 경진대회 지원금 등이 대회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에 비해 적게 지원되어 행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으로 증액지원되도록 조치

10.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매결연사업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자문을 통해 우리군과 유사한 여건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결연 추진

11.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임을 감안하여 매년 타 사업에 비해 투자가 안되고 있으니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대책 강구

12.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샤워장, 대기실 등 복지시설이 미비하여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설확충이 요구됨 .

13. 주택가나 시가지 등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가스저장고는 화재 등 사고시 많은 인적, 물적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니 재난방지차원에서 시외지역으로 이전 조치

14. 최근 우리지역에서 시험 재배된 고랭지 양파가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한 대체작목 개발차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으니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

15. 현재 군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수공무원의 효율적인 채용방안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제도의 적극 활용

16. 지역업체 및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요하는 성질의 공사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내 업체에게 수주토록 지원 토록 방안 강구

17. 평창군 직장체육부 운영에 따른 선수 영입 문제에 대하여 현재 관내에 본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관계로 향후 선수영입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성 있는 종목을 선택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 됨.

## 7. 기타 특이사항

—— 없 음 ——

1996年度第4回平昌郡一般會計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審 査 報 告 書

1996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6년 12월 14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2.16상정)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5.12.19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996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 8,300만원이며 이를 합한 199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 규모는 기정예산 950억 4,7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952억 3,000만원임.

○ 이중 일반회계는 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3,700만원이 감소 하였음.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없 음】

## 4. 質疑및 答辯要旨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ㅇ장평 보건지소 시설보강 관련하여 현 용평 보건지소의 장평 이전 및 인력, 시설이 보강됨에 따라 봉평지소가 장평 보건지소로의 흡수 통합이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 ·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 안할 것이며, 봉평 보건지소의 장평으로 통합 여론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향후에는 봉평 보건지소의 시설 및 설비의 노후에 따라 보강을 할 계획임. |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 --- |
| ㅇ방림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97당초예산에 다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 · '96년 당초에는 방림4리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설계비 부족과 사업지가 운교리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에 삭감을 하고, '97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 |
| ㅇ 봉평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설비로 (주)보광의 부담금 23억 1,900만원을 삭감하고, '97당초예산에 다시 시설비를 계상하게 된 경위는? | · 당초 (주) 보광과의 협의계약으로 시설비를 23억 1,900만원 계상하였으나 부지선정 지연으로 금년에 사업을 착공치 못하여 부득이 23억 1,900만원을 삭감 처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임. |
| ㅇ 뇌운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9,100만원중 군비부담이 74%인 1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군비 부담율이 큼. | ·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사업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에 의거 계상되었음. |

5. 討論要旨

【없　　음】

6. 審査結果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없　　음】

8. 其他 必要한事項

【없　　음】

첨부 : 1.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증액내역

##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 제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를 960,561천원으로 한다.

## 2. 예산 수정의결 내역

### 가. 총 괄

(단위:천원)

| 회계별 | 지방자치단체제출예산액 | 수정안 | | 수정예산액 | 비고 |
|---|---|---|---|---|---|
| | | 감액 | 증액 | | |
| 합계 | 95,315,305 | 831,796 | 831,796 | 95,315,305 | |
| 일반회계 | 88,125,720 | 831,796 | 831,796 | 88,125,720 | |
| 특별회계 | 7,189,585 | 0 | 0 | 7,189,585 | |

###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 과목 | | | 지방자치단체제출예산액 | 수정안 | | 수정예산액 | 수정사유및내역 |
|---|---|---|---|---|---|---|---|
| 관 | 항 | 세항 | | 감액 | 증액 | | |
| 계 | | | 95,315,305 | 831,796 | 831,796 | 95,315,305 | |
| (본청) | | | 77,574,570 | 831,796 | 831,796 | 76,742,774 | |
| 1000 일반행정 | | | 15,315,306 | 722,000 | 0 | 14,593,306 | |
| 1100 입법및선거관계 | | | 1,266,635 | 722,000 | 0 | 544,635 | |
| | 1120 지방의회운영 | | 1,266,635 | 722,000 | 0 | 544,635 | |
| | | 1121 의사운영 | 1,120,635 | 722,000 | 0 | 398,635 | 군의회청사증축및보수공사 △722000 |

(단위:천원)

| 과목 | | | 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 | 수정안 | | 수정 예산액 | 수정사유 및 내역 |
|---|---|---|---|---|---|---|---|
| 관 | 항 | 세항 | | 감액 | 증액 | | |
| 1200 일반행정비 | | | 14,419,501 | 0 | 722,000 | 15,141,501 | |
| | 1250 재무행정 | | 3,605,951 | 0 | 722,000 | 4,327,951 | |
| | | 1253 계산관리 | 3,314,880 | 0 | 722,000 | 4,036,880 | 군의회청사증축및보수공사 722000 |
| 3000 경제개발 | | | 36,545,413 | 109,796 | 0 | 36,435,617 | |
|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 | | | 21,012,053 | 109,796 | 0 | 20,902,257 | |
| | 3310 산림자원개발 | | 6,035,328 | 109,796 | 0 | 5,925,532 | |
| | | 3311 산림관리 | 3,008,125 | 109,796 | 0 | 2,898,329 | 군유림피해목벌채 △109796 |
|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 | | 1,728,459 | 0 | 109,796 | 1,838,255 | |
| 5400 예비비 | | | 850,765 | 0 | 109,796 | 960,561 | |
| | 5410 예비비 | | 850,765 | 0 | 109,796 | 960,561 | |
| | | 5411 예비비 | 850,765 | 0 | 109,796 | 960,561 | 일반예비비 중 109,796 |

#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 의안 번호 | 120 |
|---|---|

제출년월일 : '96.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의결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특별회계는 85백만원이며

{ 세 입 }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사업외수입 6백만원, 보조금 79백만원이며,

{ 세 출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79백만원, 예비비및기타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사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자치법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게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6년도 (4회추경수정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 산 총 칙 |
| --- |
| 세 입 세 출 예 산 |

평 창 군

# 예 산 총 칙

1996 년도 [ 4회추경 ]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회계별 |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일시차입 한도액 |
|---|---|---|---|
| 총계 | | 95,315,305 | 2,859,459 |
| 일반회계 | | 88,125,720 | 2,643,771 |
| 특별회계 | | 7,189,585 | 215,687 |
| | 상수도특별회계 | 5,305,224 | 159,156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387,317 | 11,619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 728,934 | 21,868 |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580,329 | 17,409 |
|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55,395 | 1,661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41,866 | 1,255 |
| |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 90,520 | 2,71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50,765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 구분 / 회계별 | 예산액 | 전년도(기정) 예산액 | 증△감 |
|---|---|---|---|
| 계 | 95,315,305 | 95,230,685 | 84,620 |
| 일반회계 | 88,125,720 | 88,125,720 | 0 |
| 특별회계 | 7,189,585 | 7,104,965 | 84,620 |
| 상수도 | 5,305,224 | 5,305,224 | 0 |
| 주택사업 | 387,317 | 387,317 | 0 |
| 의료보호기금 | 728,934 | 644,314 | 84,620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 580,329 | 580,329 | 0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 55,395 | 55,395 | 0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41,866 | 41,866 | 0 |
| 주차장 설치및관리 | 90,520 | 90,520 | 0 |
| | | | 0 |
| | | | 0 |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질별>

(단위 : 천원)

| 구분 |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 세입 | 계 | 95,315,305 | 100% | 95,230,685 | 100% | 84,620 | 88,125,720 | 100% | 88,125,720 | 100% | 0 | 7,189,585 | 100% | 7,104,965 | 100% | 84,620 |
| | 지방세 | 9,522,672 | 10% | 9,522,672 | 10% | 0 | 9,522,672 | 11% | 9,522,672 | 11% | 0 | 0 | 0% | 0 | 0% | 0 |
| | 세외수입 | 20,884,719 | 22% | 20,878,820 | 22% | 5,899 | 15,702,667 | 18% | 15,702,667 | 18% | 0 | 5,182,052 | 72% | 5,176,153 | 73% | 5,899 |
| | 경상적세외수입 | 9,324,429 | 10% | 9,324,429 | 10% | 0 | 8,375,343 | 10% | 8,375,343 | 10% | 0 | 949,086 | 13% | 949,086 | 13% | 0 |
| | 임시적세외수입 | 11,560,290 | 12% | 11,554,391 | 12% | 5,899 | 7,327,324 | 8% | 7,327,324 | 8% | 0 | 4,232,966 | 59% | 4,227,067 | 59% | 5,899 |
| | 지방교부세 | 29,969,000 | 31% | 29,969,000 | 31% | 0 | 29,969,000 | 34% | 29,969,000 | 34% | 0 | | 0% | | 0% | 0 |
| | 지방양여금 | 8,506,514 | 9% | 8,506,514 | 9% | 0 | 8,506,514 | 10% | 8,506,514 | 10% | 0 | | 0% | | 0% | 0 |
| | 보조금 | 24,532,400 | 26% | 24,453,679 | 26% | 78,721 | 23,524,867 | 27% | 23,524,867 | 27% | 0 | 1,007,533 | 14% | 928,812 | 13% | 78,721 |
| | 국고보조금 | 13,115,514 | 14% | 13,052,537 | 14% | 62,977 | 12,556,374 | 14% | 12,556,374 | 14% | 0 | 559,140 | 8% | 496,163 | 7% | 62,977 |
| | 도비보조금 | 11,416,886 | 12% | 11,401,142 | 12% | 15,744 | 10,968,493 | 12% | 10,968,493 | 12% | 0 | 448,393 | 6% | 432,649 | 6% | 15,744 |
| | 지방채 | 1,900,000 | 2% | 1,900,000 | 2% | 0 | 900,000 | 1% | 900,000 | 1% | 0 | 1,000,000 | 14% | 1,000,000 | 14% | 0 |
| 세출 | 계 | 95,315,305 | 100% | 95,230,685 | 100% | 84,620 | 88,125,720 | 100% | 88,125,720 | 100% | 0 | 7,189,585 | 100% | 7,104,965 | 100% | 84,620 |
| | 인건비 | 10,728,160 | 11% | 10,728,160 | 11% | 0 | 10,713,812 | 12% | 10,713,812 | 12% | 0 | 14,348 | 0% | 14,348 | 0% | 0 |
| | 물건비 | 10,435,481 | 11% | 10,356,760 | 11% | 78,721 | 9,482,790 | 11% | 9,482,790 | 11% | 0 | 952,691 | 13% | 873,970 | 12% | 78,721 |
| | 이전경비 | 6,328,678 | 7% | 6,328,678 | 7% | 0 | 5,878,802 | 7% | 5,878,802 | 7% | 0 | 449,876 | 6% | 449,876 | 6% | 0 |
| | 자본지출 | 63,415,562 | 67% | 63,415,562 | 67% | 0 | 58,565,326 | 66% | 58,565,326 | 66% | 0 | 4,850,236 | 67% | 4,850,236 | 68% | 0 |
| | 융자및출자 | 584,703 | 1% | 584,703 | 1% | 0 | | 0% | | 0% | 0 | 584,703 | 8% | 584,703 | 8% | 0 |
| | 보전재원 | 790,724 | 1% | 790,724 | 1% | 0 | 527,051 | 1% | 527,051 | 1% | 0 | 263,673 | 4% | 263,673 | 4% | 0 |
| | 내부거래 | 1,995,895 | 2% | 1,995,895 | 2% | 0 | 1,995,895 | 2% | 1,995,895 | 2% | 0 | | 0% | | 0% | 0 |
| | 예비비및기타 | 1,036,102 | 1% | 1,030,203 | 1% | 5,899 | 962,044 | 1% | 962,044 | 1% | 0 | 74,058 | 1% | 68,159 | 1% | 5,899 |

## '96 사업별목별세출예산

[ 4회추경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 경비 | 자본 지출 | 융자및출자 | 보전 재원 | 내부 거래 | 예비비및기타 |
|---|---|---|---|---|---|---|---|---|---|
| 합 계 | 7,189,585 | 14,348 | 952,691 | 449,876 | 4,850,236 | 584,703 | 263,673 | | 74,058 |
| 1 상수도특별회계 | 5,305,224 | | 248,940 | 191,039 | 4,727,920 | | 116,325 | | 21,000 |
| 2 주택사업특별회계 | 387,317 | 6,732 | 4,400 | 228,837 | | | 147,348 | | |
| 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728,934 | 7,616 | 696,875 | | | 6,850 | | | 17,593 |
| 4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 | 580,329 | | 2,476 | | | 567,853 | | | 10,000 |
| 5 50 | | | | | | | | | |
| 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 55,395 | | | 30,000 | | | | | 25,395 |
| 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41,866 | | | | 31,796 | 10,000 | | | 70 |
| 8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 | 90,520 | | | | 90,520 | | | | |

# 명 시 이 월 조 서

# 명 시 이 월 조 서

일 반 회 계

(단위 : 원)

| 예산과목 | | | | | | 사업명 | 예산액 | 기지출액 | 이월액 | 이월사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 | | |
| 합 계 | | | | | | 51건 | 24,749,107,000 | 5,004,473,700 | 19,744,633,300 | |
| 본 청 예 산 | | | | | | 47건 | 24,489,107,000 | 4,928,384,830 | 19,560,722,170 | |
| 일반행정비 | 일반행정비 | 내무행정비 | 민원실운영 | 자체사업 | 401-04 | .종합민원실실내인테리어 | 296,000,000 | | 296,000,000 | 민원실신축공사지연 |
| | | 재무행정비 | 재산관리 | 자체사업 | 401-04 | .청사데니스장설치공사 | 60,000,000 | | 60,000,000 | " |
| | | | | | 401-04 | .군의회청사증축및보수공사 | 700,000,000 | | 700,000,00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 " | 1,000,000 | | 1,000,000 | " |
| | | | | | 401-06 | . " | 21,000,000 | | 21,000,000 | " |
| 사회개발비 | 교육및문화 | 문화예술 | 문화체육진흥관리 | 국고보조 | 402-01 | .월정사유물전시관건립 | 1,000,000,000 | | 1,000,000,000 | 문체부협의지연 |
| | | | | 시도비보조 | 401-04 | .평창궁도장(대한정)건립 | 381,500,000 | | 381,500,000 | 사업부지협의지연(강원도) |
| | | | | | 401-05 | . " | 1,670,000 | 906,000 | 764,000 | " |
| | | | | | 401-06 | . " | 8,828,000 | | 8,828,000 | " |
| | 보건및생활환 | 보건 | 보건관리 | 국고보조 | 401-04 | .의료원의사숙소 | 156,348,000 | | 156,348,000 | 보건복지부협의지연(3회추경) |
| | | | | | 401-02 | . " | 8,600,000 | | 8,600,000 | " |
| | | | | | 401-05 | . " | 1,000,000 | | 1,000,000 | " |
| | | | | | 401-06 | . " | 7,500,000 | | 7,500,000 | " |
| | | | | | 401-04 | .용산보건진료소 | 110,000,000 | | 110,000,000 | 보건복지부협의지연(3회추경) |
| | | | | | 401-02 | . " | 6,440,000 | | 6,440,000 | " |
| | | | | | 401-05 | . " | 446,000 | | 446,000 | " |
| | | | | | 401-04 | .장평보건지소시설보강 | 293,601,000 | | 293,601,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 | | | 401-02 | " | 14,000,000 | | 14,000,000 | " |
| | | | | | 401-05 | " | 1,000,000 | | 1,000,000 | " |
| | | | | | 401-06 | " | 12,000,000 | | 12,000,000 | " |
| | | | | | 405-01 | .방문보건차량구입 | 10,000,000 | | 10,000,000 | " |
| | | | | | | .휴대용방문보건장비셋트 | 140,000 | | 140,000 | " |
| | | | | | | .의료원진료장비보강 | 6,000,000 | | 6,000,000 | " |
|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시도비보조 | 401-04 | .농촌오수처리시설 | 676,860,000 | 268,583,760 | 408,276,240 | 절대공기부족(96.8 ~ 97.2) |
| | | | | 자체사업 | 405-01 | .대기오염측정장비구입 | 50,000,000 | | 50,000,000 | 구입장비협의지연 |
| | | | 청소관리 | 국고보조금 | 401-04 |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 | 2,160,000,000 | | 2,160,000,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 | | | 401-02 | . " | 40,000,000 | | 40,000,000 | " |
| | | | | | 401-03 | . " | 3,000,000 | | 3,000,000 | " |
| | | | | | 401-05 | . " | 5,000,000 | | 5,000,000 | " |
| | | | | | 401-06 | . " | 42,768,000 | | 42,768,000 | " |

(단위 : 원)

| 예산과목 | | | | | | 사업명 | 예산액 | 기지출액 | 이월액 | 이월사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 | | |
| | | | | 시도비보조 | 401-04 | .소규모쓰레기소각시설 | 99,333,000 | | 99,333,000 | 부지매입협의지연 |
| | 사회보장 | 가정복지 | 가정복지 | 시도비보조 | 401-04 | .민속생활용품전시관 | 50,000,000 | | 50,000,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 | | | 401-02 | . " | 3,000,000 | | 3,000,000 | " |
| | | | 유아복지 | 국고보조금 | 402-02 | .보육시설증개축 | 87,120,000 | | 87,120,000 | 부지협의지연 |
| | 주택및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개발 | 지역개발 | 시도비보조 | 401-04 | .오지개발사업 | 1,015,434,000 | 838,590,680 | 176,843,320 | 절대공기부족 |
| | | | | 자체사업 | 401-04 | .대화3리노인회관신축 | 30,000,000 | | 30,000,000 | 절대공기부족(대화면) |
| | | 도시개발 | 지적관리 | 경상적경비 | 201-10 | .지적공부보관함외4종 | 25,954,000 | | 25,954,000 | 민원실신축지연 |
| | | | | | 405-02 | .지적서고항온항습기구입 | 19,800,000 | | 19,800,000 | " |
| | | | 도시계획관리 | 시도비보조 | 208-00 | .황계도시계획상세계획 | 300,000,000 | | 300,000,000 | 도비보조및협의지연 |
| | | | 상하수관리 | 지방양여금사업 | 401-04 | .농촌취락구조개선 | 204,670,000 | 49,607,280 | 155,062,72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 " | 1,350,000 | 861,300 | 488,700 | " |
| | | | | 자체사업 | 401-04 | .전부시가지하수도정비 | 100,000,000 | | 100,000,00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4 | .황계시가지하수도정비 | 100,000,000 | | 100,000,000 | 부지매입협의지연 |
| | | | | | 401-04 | .풍산리하수도정비 | 150,000,000 | | 150,000,00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하수도정비사업부대비 | 2,000,000 | 600,000 | 1,400,000 | " |
| | | | | 시도비보조 | 401-04 | .전부시가지정비사업 | 500,000,000 | 46,274,920 | 453,725,08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 " | 2,500,000 | 806,000 | 1,694,000 | " |
| 경제개발비 | 농수산개발 | 농정관리 | 농업기반조성 | 국고보조금 | 401-04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95,850,000 | 85,568,400 | 10,281,60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4 | .발기반정비사업 | 862,336,000 | | 862,336,000 | 절대공기부족(96.11 ~ 97.6) |
| | | | | | 401-05 | . " | 4,000,000 | | 4,000,000 | " |
| | | | | | 401-06 | . " | 144,196,000 | | 144,196,000 | " |
| | | | | | | .'96가을작수경지정리사업 | 63,000,000 | | 63,000,000 | " (96.11 ~ 97. 5) |
| | | | | 시도비보조 | 401-04 | .정주권개발사업 | 348,133,000 | 102,723,760 | 245,409,24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 " | 2,980,000 | 980,000 | 2,000,000 | " |
| | | 농촌진흥 | 서무관리 | 국고보조금 | 401-04 | .지역농업개발센타 | 1,969,235,000 | 80,999,630 | 1,888,235,370 | 절대공기부족 |
| | | | | | 401-05 | . " | 4,500,000 | 2,000,000 | 2,500,000 | " |
| | | | | | 401-06 | . " | 54,064,000 | | 54,064,000 | " |
| | 지역경제개발 | 광공업관리 | 광공업관리 | 국고보조금 | 402-01 | .광해방지사업(빈진) | 60,480,000 | | 60,480,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국토자원보존 | 치수및재해대책 | 하천관리 | 시도비보조금 | 401-04 | .상리교량가설공사 | 399,000,000 | 4,962,900 | 394,037,100 | 절대공기부족(96.11 ~ 97.5) |
| | | | | | 401-05 | . " | 1,000,000 | 620,000 | 380,000 | " |
| | | | | | 401-04 | .재해위험지구(명창천정비) | 191,320,000 | | 191,320,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 | | | 401-02 | . " | 8,680,000 | | 8,680,000 | " |

(단위 : 원)

| 예산과목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사업명 | 예산액 | 기지출액 | 이월액 | 이월사유 |
|---|---|---|---|---|---|---|---|---|---|---|
| | | | | 자 체 | 401-04 | .마평2리세월교가설 | 60,000,000 | | 60,000,000 | 절대공기부족(전부변) |
| | | | 제 해 | 시도비 | 401-04 | .상안미계해위험해소사업 | 600,000,000 | | 600,000,000 | 절대공기부족 |
| | | | 대 회 | 보조금 | 401-05 | . " | 2,000,000 | | 2,000,000 | " |
| | | 건 설 | 도 로 | 국 고 | 401-04 | .평계-송천교간4차선확포장 | 71,500,000 | | 71,500,000 |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 | | 관 리 | 건 설 | | | | | | | |
| | | | | 지방양 | 401-04 | .노론-하안미간군도확포장 | 489,897,000 | 433,679,650 | 56,217,350 | 절대공기부족(96.5 ~ 97. 3) |
| | | | | 어금사 | | .신리-마평간 " | 2,578,885,000 | 774,684,030 | 1,804,200,970 | " (96.8 ~ 97. 2) |
| | | | | | | .루어-상진부간 " | 1,245,084,000 | 562,082,610 | 683,001,390 | " (96.6 ~ 97. 2) |
| | | | | | | .하리-종부간농어촌도로확포 | 755,511,000 | 299,295,430 | 456,215,570 | " (96.6 ~ 97. 5) |
| | | | | | | .금당-궁항간 " | 1,038,205,000 | 519,082,790 | 519,122,210 | " (96.5 ~ 97. 3) |
| | | | | | | .선2-4리간 " | 715,453,000 | 258,248,000 | 457,205,000 | " (96.6 ~ 97. 5) |
| | | | | | 401-05 | .군도확포장사업추진부대비 | 11,000,000 | | 11,000,000 | " |
| | | | | | 401-02 |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 | 223,995,000 | 102,215,140 | 121,779,860 | " |
| | | | | | 401-03 | . " | 92,452,000 | 451,000 | 92,001,000 | " |
| | | | | | 401-05 | .농어촌도로확포장부대비 | 11,000,000 | | 11,000,000 | " |
| | | | | 시도비 | 401-04 | .감자원종장진입로확포장 | 1,736,000,000 | 443,465,590 | 1,292,534,410 | 절대공기부족(96.6 ~ 97.6) |
| | | | | 보 조 | 401-05 | . " | 3,000,000 | | 3,000,000 | " |
| | | | | | 401-03 | . " | 18,137,000 | 1,514,000 | 16,623,000 | " |
| | | | | | 401-04 | .미날교가설공사 | 676,732,000 | | 676,732,000 | 절대공기부족(96.12 ~ 97.11) |
| | | | | | 401-03 | . " | 1,500,000 | | 1,500,000 | " |
| | | | | 자 체 | 401-04 | .노후교량보수 | 175,000,000 | 42,160,000 | 132,840,000 | " |
| | | | | 사 업 | 401-04 | .송정교가설공사 | 800,000,000 | | 800,000,000 | 절대공기부족(4회추경) |
| | | | | | 401-02 | . " | 32,120,000 | | 32,120,000 | " |
| | | | | | 401-05 | . " | 2,000,000 | | 2,000,000 | " |
| | | | | | 401-04 | .풍산리소교량가설 | 40,000,000 | 3,380,280 | 36,619,720 | 절대공기부족(96.10 ~ 97. 1) |
| | | | | | 401-04 | .적천리소교량가설 | 120,000,000 | 4,041,680 | 115,958,320 | 절대공기부족(96.11 ~ 97. 5) |
| 민 방 | 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 | 국 고 | 401-04 | 경보싸이렌설치 | 15,000,000 | | 15,000,000 | (전부변) |
| 위 비 | 관 리 | 관 리 | 관 리 | 보조금 | | | | | |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 읍 면 예 산 | | | | | | 4건 | 260,000,000 | 76,088,870 | 183,911,130 | |
| 사 회 | 사 회 | 가 정 | 가 정 | 시도비 | 401-04 | .대화3리노인회관신축 | 10,000,000 | | 10,000,000 |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 개 발 | 보 장 | 복 지 | 복 지 | 보조 | 401-04 | .제산1리노인회관신축 | 50,000,000 | | 50,000,000 |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 | | | | | 401-04 | .하안미3리노인회관신축 | 40,000,000 | | 40,000,000 | 절대공기부족(3회추경) |
| | 주택및 | 지역사 | 지 역 | 시도비 | 401-04 | .하진부6리하수도및진입로확 | 100,000,000 | 76,088,870 | 23,911,130 | 절대공기부족(96.10 ~ 97.2) |
| | 지역사 | 회개발 | 개 발 | 보 조 | | | | | | |
| 경 제 | 농수산 | 농 정 | 농업기 | 자 체 | 401-04 | .백옥포양수시설확충 | 60,000,000 | | 60,000,000 | 절대공기부족 |
| 개발비 | 개 발 | 관 리 | 반조성 | 사 업 | | | | | | |

# 명 시 이 월 조 서

특 별 회 계

(단위 : 원)

| 예산과목 | | | | | | 사업명 | 예산액 | 기지출액 | 이월액 | 이월사유 |
|---|---|---|---|---|---|---|---|---|---|---|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 | | | |
| 합 계 | | | | | | 6 건 | 3,349,122,000 | 887,299,710 | 2,461,822,290 | |
| 사회개발비 | 주택및지역사 | 도시개발 | 상하수관리 | 경상적경비 | 208-00 | .진부상수원보호구역제지정 | 12,000,000 | | 12,000,000 | 취수시설미완공 |
| | | | | 자체사업 | 401-04 | .용평상수도시설확장 | 1,250,000,000 | 407,527,020 | 842,472,980 | 절대공기부족(96.9 ~ 97.7) |
| | | | | | 401-05 | . " | 4,000,000 | 2,700,000 | 1,300,000 | " |
| | | | | | 401-06 | . " | 80,000,000 | | 80,000,000 | " |
| | | | | | 401-04 | .진부상수도시설확장 | 1,500,000,000 | 381,631,670 | 1,118,368,330 | " (96.10 ~ 97.6) |
| | | | | | 401-05 | . " | 4,000,000 | 2,300,000 | 1,700,000 | " |
| | | | | | 401-06 | . " | 100,000,000 | | 100,000,000 | " |
| | | | | | 401-04 | .이목정1리간이상수도신설 | 74,922,000 | 5,392,320 | 69,529,680 | " (96.11 ~ 97.2) |
| | | | | | | .호명리간이상수도신설 | 200,000,000 | 72,791,420 | 127,208,580 | " (96.11 ~ 97.3) |
| | | | | | | .천동리간이상수도신설 | 124,200,000 | 14,957,280 | 109,242,720 | " (96.11 ~ 97.2) |

#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 의안 번호 | 116 |
|---|---|

제출년월일 : '96.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6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18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21백만원, 특별회계는 △ 338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144백만원, 세외수입 △ 1,836백만원, 지방교부세 446백만원, 보조금 1,76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 290백만원, 사업외수입 △ 48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 710백만원, 물건비 △ 95백만원, 이전경비 △ 167백만원, 자본지출 1,701백만원, 내부거래 △ 28백만원, 예비비및기타 △ 18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물건비 5백만원, 이전경비 △ 290백만원, 자본지출 △ 10백만원, 보전재원 △ 4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996년도 (4회추경)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
| 예 산 총 칙 |
| 세 입 세 출 예 산 |

평 창 군

# 예 산 총 칙

1996 년도 [ 4회추경 ]

* 제1조 :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회계별 |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일시차입 한도액 |
|---|---|---|---|
| 총계 | | 95,230,685 | 2,856,920 |
| 일반회계 | | 88,125,720 | 2,643,771 |
| 특별회계 | | 7,104,965 | 213,148 |
| | 상수도특별회계 | 5,305,224 | 159,156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387,317 | 11,619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644,314 | 19,329 |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580,329 | 17,409 |
|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55,395 | 1,661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41,866 | 1,255 |
| |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 90,520 | 2,715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10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6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50,765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 구분 / 회계별 | 예산액 | 전년도 (기정) 예산액 | 증△감 |
|---|---|---|---|
| 계 | 95,230,685 | 95,047,173 | 183,512 |
| 일반회계 | 88,125,720 | 87,604,464 | 521,256 |
| 특별회계 | 7,104,965 | 7,442,709 | -337,744 |
| 상수도 | 5,305,224 | 5,310,284 | -5,060 |
| 주택사업 | 387,317 | 720,001 | -332,684 |
| 의료보호기금 | 644,314 | 644,314 | 0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 580,329 | 580,329 | 0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 55,395 | 55,395 | 0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41,866 | 41,866 | 0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90,520 | 90,520 | 0 |
| | | 0 | 0 |
| | | 0 | 0 |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질별>

(단위 : 원원)

| 구분 |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 세입 | 계 | 95,230,685 | 100% | 95,047,173 | 100% | 183,512 | 88,125,720 | 100% | 87,604,464 | 100% | 521,256 | 7,104,965 | 100% | 7,442,709 | 100% | -337,744 |
| | 지방세 | 9,522,672 | 10% | 9,378,672 | 10% | 144,000 | 9,522,672 | 11% | 9,378,672 | 11% | 144,000 | 0 | 0% | 0 | 0% | 0 |
| | 세외수입 | 20,878,820 | 22% | 23,052,909 | 24% | -2,174,089 | 15,702,667 | 18% | 17,539,012 | 20% | -1,836,345 | 5,176,153 | 73% | 5,513,897 | 74% | -337,744 |
| | 경상적세외수입 | 9,324,429 | 10% | 8,722,382 | 9% | 602,047 | 8,375,343 | 10% | 7,483,343 | 9% | 892,000 | 949,086 | 13% | 1,239,039 | 17% | -289,953 |
| | 임시적세외수입 | 11,554,391 | 12% | 14,330,527 | 15% | -2,776,136 | 7,327,324 | 8% | 10,055,669 | 11% | -2,728,345 | 4,227,067 | 59% | 4,274,858 | 57% | -47,791 |
| | 지방교부세 | 29,969,000 | 31% | 29,523,000 | 31% | 446,000 | 29,969,000 | 34% | 29,523,000 | 34% | 446,000 | | 0% | 0 | 0% | 0 |
| | 지방양여금 | 8,506,514 | 9% | 8,506,514 | 9% | 0 | 8,506,514 | 10% | 8,506,514 | 10% | 0 | | 0% | 0 | 0% | 0 |
| | 보조금 | 24,453,679 | 26% | 22,686,078 | 24% | 1,767,601 | 23,524,867 | 27% | 21,757,266 | 25% | 1,767,601 | 928,812 | 13% | 928,812 | 12% | 0 |
| | 국고보조금 | 13,052,537 | 14% | 11,435,203 | 12% | 1,617,334 | 12,556,374 | 14% | 10,939,040 | 12% | 1,617,334 | 496,163 | 7% | 496,163 | 7% | 0 |
| | 도비보조금 | 11,401,142 | 12% | 11,250,875 | 12% | 150,267 | 10,968,493 | 12% | 10,818,226 | 12% | 150,267 | 432,649 | 6% | 432,649 | 6% | 0 |
| | 지방채 | 1,900,000 | 2% | 1,900,000 | 2% | 0 | 900,000 | 1% | 900,000 | 1% | 0 | 1,000,000 | 14% | 1,000,000 | 13% | 0 |
| 세출 | 계 | 95,230,685 | 100% | 95,047,173 | 100% | 183,512 | 88,125,720 | 100% | 87,604,464 | 100% | 521,256 | 7,104,965 | 100% | 7,442,709 | 100% | -337,744 |
| | 인건비 | 10,728,160 | 11% | 11,438,404 | 12% | -710,244 | 10,713,812 | 12% | 11,424,056 | 13% | -710,244 | 14,348 | 0% | 14,348 | 0% | 0 |
| | 물건비 | 10,356,760 | 11% | 10,446,697 | 11% | -89,937 | 9,482,790 | 11% | 9,577,727 | 11% | -94,937 | 873,970 | 12% | 868,970 | 12% | 5,000 |
| | 이전경비 | 6,328,678 | 7% | 6,785,357 | 7% | -456,679 | 5,878,802 | 7% | 6,045,528 | 7% | -166,726 | 449,876 | 6% | 739,829 | 10% | -289,953 |
| | 자본지출 | 63,415,562 | 67% | 61,724,551 | 65% | 1,691,011 | 58,565,326 | 66% | 56,864,255 | 65% | 1,701,071 | 4,850,236 | 68% | 4,860,296 | 65% | -10,060 |
| | 융자및출자 | 584,703 | 1% | 584,703 | 1% | 0 | | 0% | 0 | 0% | 0 | 584,703 | 8% | 584,703 | 8% | 0 |
| | 보전재원 | 790,724 | 1% | 833,455 | 1% | -42,731 | 527,051 | 1% | 527,051 | 1% | 0 | 263,673 | 4% | 306,404 | 4% | -42,731 |
| | 내부거래 | 1,995,895 | 2% | 2,024,195 | 2% | -28,300 | 1,995,895 | 2% | 2,024,195 | 2% | -28,300 | | 0% | 0 | 0% | 0 |
| | 예비비및기타 | 1,030,203 | 1% | 1,209,811 | 1% | -179,608 | 962,044 | 1% | 1,141,652 | 1% | -179,608 | 68,159 | 1% | 68,159 | 1% | 0 |

1997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審 査 報 告 書

1996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11월 21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1996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46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12. 4 상정)

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 12. 19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

가. 제안이유

○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 나. 주요골자

○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941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65억 900만원

. 세입예산중

- 일반회계는 지방세 99억 5,000만원, 세외수입 106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299억 4,500만원, 양여금 82억 500만원, 보조금 277억 5,200만원으로 되어있고,

-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2억 2,500만원, 사업외수입 28억 800만원, 보조금 24억 7,100만원, 지방채 10억원임.

. 세출예산중

-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128억 4,300만원, 물건비 104억 3,300만원, 이전경비 72억 3,900만원, 자본지출 531억 4,500만원, 보전재원 5억 5,7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11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4,9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인건비 1,500만원, 물건비 10억 6,600만원, 이전경비 7억 900만원, 자본지출 51억 9,700만원, 융자및출자 1억 8,600만원, 보전재원 3억 5,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전문위원 신교선 )

가.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65억 900만원, 특별회계 76억 500만원을 포함 총 941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증가 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부분

· 총 865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 5,600만원(13%)이 증가 되었으며,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가 주된 요인임.

· 일반 부담금 사업중 23억 1,900만원은 봉평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보광의 부담금이며, 수질개선 부담금 10억원은 해태음료(주) 생수공장 수질환경개선 부담금으로 향후 매출실적에 따라 높은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

.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미부담사업으로 수간주사 2억원 도암상수도 시설확충 44억원등 총 49억원이 미부담되어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되어야 하나, 계속비 대상사업중 연부액이 미확보된 사업도 있었으며, 현재 평창문화예술회관과 공설묘지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임.

· 연차별 계속되는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미미하여 계속되는 지역현안사항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특별재원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임.

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총 7개사업에서 기정대비 25억 3,700만원이 증가한 76억 5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진부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즉 월정상수도와의 통합으로 인한 배수시설등에 5억 200만원 봉평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12억 5,300만원등 대부분 상수도 시설관련 사업비임.

# 4. 質疑 및 答辯要旨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 농업관련 각종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유사한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를 한데 묶어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 · 불요불급한 경비를 없이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와 협의 행사 관련 보조비를 검토해 나가겠음. |
| ○ 농정시책사업 지원 관련하여 지역편중 및 특정인에게 중복되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를 수혜지역 및 수혜층을 다변화 하기 바람. | ·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금으로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농사규모등을 감안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역적으로나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개선해 나가겠음. |
| ○ 한우 대축제 행사는 기존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하여 군에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사관련 주민의 여론 파악 및 타당성은 재검토하여 보았는지? | · 축산군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평창군 한우 대축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축협 및 한우 전업 농가등에 행사관련 여론을 조사한 바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되었음. |
| ○ 한우 고급육 생산 숫송아지 거세사업 관련하여 농가에서는 거세후 출하시 높은 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군비를 마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 · 일반적으로 출하시에는 생후 18개월에 출하를 하고 있으나 거세를 할 경우에는 24개월안에 출하를 하므로 6개월에 대한 사육 경영비에 대한 지원금임. |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 --- |
| ○ 노람들캠프장 조성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게된 이유는? | · 본 사업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1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관광문화과에서 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광문화과에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
| ○ 자랑스런마을, 범죄없는마을, 우수사회봉사단체 시상금등은 사업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전시행정, 선심행정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간 상당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역의 자긍심 고취 및 인센티브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 ○ 문화예술회관건립 총 사업비 800억원중 41억 5,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향후 부족사업비 38억 500만원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의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 '96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국비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97년도 사업비 확보 목표액 18억 2,500만원은 반드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음. |
| ○ 효석백일장, 문화재행사(노성제), 군민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등 각종 행사 관련 지원경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 · 각종 행사관련 경비는 행사의 이익금을 발생시켜 재투자하는 방법이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현재로서는 각종 행사가 시작 단계로 행·재정적인 지원없이는 행사개최의 어려움이 있어 행사 지원경비가 전년도 대비 늘어 났으며,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따른 군비지원의 증가요인도 있음. |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 --- |
| ○ 직장 체육부(레슬링)운영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과거 평창중·고등학교의 레슬링부 창단으로 선수 수급 측면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나 현재로서는 지역 학생부 팀해체로 존치 이유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 지금까지 2년여동안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 레슬링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목을 바꾼다거나 팀해체에 대하여는 연초에 가서 면밀히 검토 하겠음. |
| ○ 군유림 피해목 직영벌채(100ha)에 따른 문제내용과 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솔직한 사업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 · 소득성 및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재원확보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나 실제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직영할 경우 인부사역 문제, 작업장 확보문제, 경계 침범시 지도공무원의 형사처벌 및 배상, 지도공무원의 상주 문제등이 있으며, 솔직한 주관부서의 입장으로는 임목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 ○ 농어촌 마을안길 사업비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역의 포장율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7억원이 확보되면 읍면별 5,000만원씩 균등배분하고 잔액 3억원은 지역의 포장율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겠음. |

## 5. 討論要旨

【없　음】

## 6. 修正案 要旨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6년 12월 14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2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 21 상정)

라. 수 정 이 유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계속비 및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등 주민편익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함

마. 수정 주요 골자

1) 일반회계 세출중

. 일반행정비　　1억 400만원

. 사회개발비　　6억 3,000만원

. 경제개발비　　5억 8,669만 7천원등

총　　13억 2,069만 7천원 삭감하고

2) 일반회계 세출

. 사회개발비　　5억원

. 경제개발비　　8억 2,069만 7천원등 13억 2,069만 7천원을 증액

## 7.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

##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첨부 : 1997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 1. 예산총칙 수정

○ 제1조

(단위:천원)

| 회 계 명 | 지방자치단체제출 | 일시차입한도액 | 비 고 |
|---|---|---|---|
| 계 | 94,114,739 | 2,154,634 | |
| 일 반 회 계 | 86,509,500 | 2,039,799 | |
| 특 별 회 계 | 7,605,239 | 114,834 | |

○ 제2조 ~ 제7조 : 변동사항 없음.

## 2. 예산안 수정내역

### 가.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 장 | 관 | 항 | 세 항 |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 수정 감 액 | 수정 증 액 | 수정예산액 | 수정사유및내역 |
|---|---|---|---|---|---|---|---|---|
| 계 | | | | 86,509,500 | 1,320,697 | 1,320,697 | 86,509,500 | |
| 본 청 | | | | 77,257,831 | 1,320,697 | 1,320,697 | 77,257,831 | |
| 1000 일 반 회 계 | | | | 11,753,584 | 104,000 | | 10,947,588 | |
| 1200 일 반 행 정 비 | | | | 11,051,588 | 104,000 | | 10,947,588 | |
| | 1210 기획관리 | | | 6,952,355 | 70,000 | | 6,882,355 | |
| | | 1213 예산운영 | | 6,458,037 | 70,000 | | 6,388,037 | · 군정수행 유공 민간인 보상 △ 20,000<br>· 군정수행단체 임의보조 △ 50,000 |
| | 1220 공보관리 | | | 234,491 | 27,000 | | 207,491 | |
| | | 1221 공보관리 | | 234,491 | 27,000 | | 207,491 | · 주민계도용신문 구독 △ 27,000 |
| | 1240 내무행정 | | | 2,706,300 | 7,000 | | 2,699,300 | |
| | | 1241 서무관리 | | 1,788,348 | 5,000 | | 1,783,348 | · 공무원체육대회 △ 5,000 |
| | | 1243 사회진흥 | | 96,150 | 1,000 | | 95,150 | · 우수사회봉사단체시상 △ 1,000 |

| 장 | 관 | 항 | 세 항 |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 수정 감 액 | 수정 증 액 | 수정예산액 | 수정사유및내역 |
|---|---|---|---|---|---|---|---|---|
| | | | 1245 일선행정조직운영 | 233,407 | 1,000 | | 232,407 | 군민대상상패제작 △ 1,000 |
| 2000 사회개발 | | | | 19,241,795 | 630,000 | 500,000 | 19,111,795 | |
| | 2110 문화예술 | | | 1,096,227 | 10,000 | 350,000 | 1,436,227 | |
| | | | 2111 예술문화 | 1,029,240 | 10,000 | 350,000 | 1,369,240 | · 문화예술행사(노성제 △ 10,000<br>· 문화예술회관건립 중 350,000 |
| | 2120 체육진흥관리 | | | 1,057,169 | 20,000 | 150,000 | 1,187,169 | |
| | | | 2121 체육진흥 | 1,057,169 | 20,000 | 150,000 | 1,187.169 | · 도민체육대회출전비 △ 20,000<br>· 대화문화체육관 중 150,000 |
| | 2220 환경관리 | | | 4,537,386 | 100,000 | | 4,437,386 | |
| | | | 2221 환경관리 | 297,129 | 100,000 | | 197,129 | · 쓰레기매립장관련마지2리농로포장△ 100,000 |
| | 2430 지역사회개발 | | | 1,865,000 | 500,000 | | 1,365,000 | |
| | | | 2432 지역개발 | 1,865,000 | 500,000 | | 1,365,000 | ·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 300,000<br>· 용평지구편입토지매입비 △ 200,000 |

| 장 | 관 | 항 | 세 항 |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 수정 감 액 | 수정 증 액 | 수정예산액 | 수정사유및내역 |
|---|---|---|---|---|---|---|---|---|
| 3000 경제개발 | | | | 44,117,288 | 586,697 | 820,697 | 44,351,288 | |
| | 3110 농정관리 | | | 17,053,302 | 7,500 | | 17,045,802 | |
| | | 3115 농산물 유통관리 | | 3,685,461 | 7,500 | | 3,677,961 | · 농수산물판매촉진을위한자매결연 △ 7,500 |
| | 3120 축수산진흥 | | | 453,999 | 65,214 | | 388,785 | |
| | | 3121 축산행정 | | 425,924 | 65,214 | | 360,710 | · 제1회 평창한우대축제 △ 25,214<br>· 한우고급육생산 숫송아지거세감 재보상 △ 40,000 |
| | 3310 산림자원개발 | | | 8,452,552 | 314,359 | 500,000 | 8,638,193 | |
| | | 3311 산림관리 | | 2,840,961 | | 300,000 | 3,140,961 | · 수간주사 중200,000<br>· 피해목벌채 중100,000 |
| | | 3312 조림관리 | | 5,595,607 | 314,359 | 200,000 | 5,481,248 | · 군직영잔디포조성 △ 46,359<br>· 군유림피해목직영 △ 268,000<br>· 풀베기사업 중 100,000<br>· 경제수조림 중 100,000 |
| | 3320 치수및재해대책 | | | 721,759 | 199,624 | | 522,135 | |

| 장 | 항 | 세 항 | 지방자치단체 계출 예산액 | 수 정 감 액 | 수 정 증 액 | 수정예산액 | 수정사유및내역 |
|---|---|---|---|---|---|---|---|
| 관 | | | | | | | |
| | | 3321 하천관리 | 443,153 | 199,624 | | 243,529 | · 농산물장터조성 △ 199,624 |
| | 3330 건설관리 | | 14,698,558 | | 320,697 | 15,019,255 | |
| | | 3332 도로건설 | 14,574,831 | | 320,697 | 14,895,528 | · 마을안길포장 증 320,697 |

# 1997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 의안 번호 | 110 |
|---|---|

제출년월일 : '96.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9,59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056백만원, 특별회계 2,537백만원입니다.

{ 세 입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578백만원, 지방양여금 3,178백만원, 보조금 3,3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금 689백만원, 전입금 193백만원, 보조금 1,6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물건비 360백만원, 이전경비 636백만원, 자본지출 5,885백만원, 내부거래 19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1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 1백만원, 자본지출 2,53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사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자치법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7년도(수정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 산 총 칙 |
| --- |
| 세 입 세 출 예 산 |

평 창 군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 구분 / 회계별 | 예산액 | 전년도 (기정) 예산액 | 증△감 |
|---|---|---|---|
| 계 | 94,114,739 | 84,520,768 | 9,593,971 |
| 일반회계 | 86,509,500 | 79,453,000 | 7,056,500 |
| 특별회계 | 7,605,239 | 5,067,768 | 2,537,471 |
| 상수도 | 5,838,354 | 3,300,000 | 2,538,354 |
| 주택사업 | 646,876 | 646,876 | 0 |
| 의료보호기금 | 819,590 | 820,473 | -883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 173,739 | 173,739 | 0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 55,000 | 55,000 | 0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40,000 | 40,000 | 0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31,680 | 31,680 | 0 |
| | 0 | 0 | 0 |
| | 0 | 0 | 0 |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경제성질별>

(단위 : 천원)

| 구분 |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 세입 | 계 | 94,114,739 | 100% | 84,520,768 | 100% | 9,593,971 | 86,509,500 | 100% | 79,453,000 | 100% | 7,056,500 | 7,605,239 | 100% | 5,067,768 | 100% | 2,537,471 |
| | 지방세 | 9,950,704 | 11% | 9,950,704 | 12% | 0 | 9,950,704 | 12% | 9,950,704 | 13% | 0 | 0 | 0% | 0 | 0% | 0 |
| | 세외수입 | 14,790,864 | 16% | 13,329,862 | 16% | 1,461,002 | 10,656,640 | 12% | 10,078,142 | 13% | 578,498 | 4,134,224 | 54% | 3,251,720 | 64% | 882,504 |
| | 경상적세외수입 | 6,457,130 | 7% | 6,457,130 | 8% | 0 | 5,131,219 | 6% | 5,131,219 | 6% | 0 | 1,325,911 | 17% | 1,325,911 | 26% | 0 |
| | 임시적세외수입 | 8,333,734 | 9% | 6,872,732 | 8% | 1,461,002 | 5,525,421 | 6% | 4,946,923 | 6% | 578,498 | 2,808,313 | 37% | 1,925,809 | 38% | 882,504 |
| | 지방교부세 | 29,945,000 | 32% | 29,945,000 | 35% | 0 | 29,945,000 | 35% | 29,945,000 | 38% | 0 | 0 | 0% | 0 | 0% | 0 |
| | 지방양여금 | 8,205,037 | 9% | 5,027,000 | 6% | 3,178,037 | 8,205,037 | 9% | 5,027,000 | 6% | 3,178,037 | 0 | 0% | 0 | 0% | 0 |
| | 조정교부금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보조금 | 30,223,134 | 32% | 25,268,202 | 30% | 4,954,932 | 27,752,119 | 32% | 24,452,154 | 31% | 3,299,965 | 2,471,015 | 32% | 816,048 | 16% | 1,654,967 |
| | 국고보조금 | 20,880,329 | 22% | 19,481,923 | 23% | 1,398,406 | 20,234,377 | 23% | 18,835,971 | 24% | 1,398,406 | 645,952 | 8% | 645,952 | 13% | 0 |
| | 도비보조금 | 9,342,805 | 10% | 5,786,279 | 7% | 3,556,526 | 7,517,742 | 9% | 5,616,183 | 7% | 1,901,559 | 1,825,063 | 24% | 170,096 | 3% | 1,654,967 |
| | 지방채 | 1,000,000 | 1% | 1,000,000 | 1% | 0 | 0 | 0% | 0 | 0% | 0 | 1,000,000 | 13% | 1,000,000 | 20% | 0 |
| 세출 | 계 | 94,114,739 | 100% | 84,520,768 | 100% | 9,593,971 | 86,509,500 | 100% | 79,453,000 | 100% | 7,056,500 | 7,605,239 | 100% | 5,067,768 | 100% | 2,537,471 |
| | 인건비 | 12,858,910 | 14% | 12,859,793 | 15% | -883 | 12,843,727 | 15% | 12,843,727 | 16% | 0 | 15,183 | 0% | 16,066 | 0% | -883 |
| | 물건비 | 11,500,553 | 12% | 11,140,942 | 13% | 359,611 | 10,433,704 | 12% | 10,074,093 | 13% | 359,611 | 1,066,849 | 14% | 1,066,849 | 21% | 0 |
| | 이전경비 | 7,949,056 | 8% | 7,312,396 | 9% | 636,660 | 7,239,229 | 8% | 6,602,569 | 8% | 636,660 | 709,827 | 9% | 709,827 | 14% | 0 |
| | 자본지출 | 58,343,289 | 62% | 49,919,253 | 59% | 8,424,036 | 53,145,791 | 61% | 47,260,109 | 59% | 5,885,682 | 5,197,498 | 68% | 2,659,144 | 52% | 2,538,354 |
| | 융자및출자 | 186,300 | 0% | 186,300 | 0% | 0 | 0 | 0% | 0 | 0% | 0 | 186,300 | 2% | 186,300 | 4% | 0 |
| | 보전재원 | 911,306 | 1% | 911,306 | 1% | 0 | 557,051 | 1% | 557,051 | 1% | 0 | 354,255 | 5% | 354,255 | 7% | 0 |
| | 내부거래 | 1,140,647 | 1% | 947,297 | 1% | 193,350 | 1,140,647 | 1% | 947,297 | 1% | 193,350 | 0 | 0% | 0 | 0% | 0 |
| | 예비비및기타 | 1,224,678 | 1% | 1,243,481 | 1% | -18,803 | 1,149,351 | 1% | 1,168,154 | 1% | -18,803 | 75,327 | 1% | 75,327 | 1% | 0 |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세항별>

(단위 : 원원)

| 구분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 계 | 94,114,739 | 100% | 84,520,768 | 100% | 9,593,971 | 86,509,500 | 100% | 79,453,000 | 100% | 7,056,500 | 7,605,239 | 100% | 5,067,768 | 100% | 2,537,471 |
| 경상예산 | 25,703,864 | 27% | 25,647,333 | 30% | 56,531 | 25,424,926 | 29% | 25,367,512 | 32% | 57,414 | 278,938 | 4% | 279,821 | 6% | -883 |
| 인건비 | 12,858,910 | 14% | 12,859,793 | 15% | -883 | 12,843,727 | 15% | 12,843,727 | 16% | 0 | 15,183 | 0% | 16,066 | 0% | -883 |
| 판서운영비 | 605,700 | 1% | 605,700 | 1% | 0 | 605,700 | 1% | 605,700 | 1% | 0 | 0 | 0% | 0 | 0% | 0 |
| 경상적경비 | 12,239,254 | 13% | 12,181,840 | 14% | 57,414 | 11,975,499 | 14% | 11,918,085 | 15% | 57,414 | 263,755 | 3% | 263,755 | 5% | 0 |
| 사업예산 | 65,391,943 | 69% | 55,835,700 | 66% | 9,556,243 | 59,205,051 | 68% | 52,187,162 | 66% | 7,017,889 | 6,186,892 | 81% | 3,648,538 | 72% | 2,538,354 |
| 국고보조사업 | 31,279,587 | 33% | 29,508,252 | 35% | 1,771,335 | 30,472,147 | 35% | 28,700,812 | 36% | 1,771,335 | 807,440 | 11% | 807,440 | 16% | 0 |
| 지방양여금사업 | 7,402,598 | 8% | 6,821,000 | 8% | 581,598 | 7,402,598 | 9% | 6,821,000 | 9% | 581,598 | 0 | 0% | 0 | 0% | 0 |
| 시.도비보조사업 | 9,956,009 | 11% | 3,693,464 | 4% | 6,262,545 | 7,482,009 | 9% | 3,688,664 | 5% | 3,793,345 | 2,474,000 | 33% | 4,800 | 0% | 2,469,200 |
| 자체사업 | 16,753,749 | 18% | 15,812,984 | 19% | 940,765 | 13,848,297 | 16% | 12,976,686 | 16% | 871,611 | 2,905,452 | 38% | 2,836,298 | 56% | 69,154 |
| 채무상환 | 1,794,254 | 2% | 1,794,254 | 2% | 0 | 730,172 | 1% | 730,172 | 1% | 0 | 1,064,082 | 14% | 1,064,082 | 21% | 0 |
| 지방채상환 | 1,794,254 | 2% | 1,794,254 | 2% | 0 | 730,172 | 1% | 730,172 | 1% | 0 | 1,064,082 | 14% | 1,064,082 | 21% | 0 |
| 채무부담행위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예비비등 | 1,224,678 | 1% | 1,243,481 | 1% | -18,803 | 1,149,351 | 1% | 1,168,154 | 1% | -18,803 | 75,327 | 1% | 75,327 | 1% | 0 |
| 예비비 | 1,224,478 | 1% | 1,243,281 | 1% | -18,803 | 1,149,351 | 1% | 1,168,154 | 1% | -18,803 | 75,127 | 1% | 75,127 | 1% | 0 |
| 기타 | 200 | 0% | 200 | 0% | 0 | 0 | 0% | 0 | 0% | 0 | 200 | 0% | 200 | 0% | 0 |

출

# 1997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안 번호 | 110 |
|---|---|

재출년월일 : '96.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84,52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9,453백만원과 특별회계 5,068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9,951백만원, 세외수입10,078백만원, 지방교부세 29,945백만원, 양여금 5,027백만원, 보조금 24,452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326백만원, 사업외수입 1,926백만원, 보조금 816백만원, 지방채 1,000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12,844백만원, 물건비10,074백만원, 이전경비 6,603백만원, 자본지출 47,260백만원, 보전재원 557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94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6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16백만원, 물건비1,067백만원, 이전경비 710백만원, 자본지출 2,659백만원, 융자 및 출자 187백만원, 보전재원 35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7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 118조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7년도(당초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 산 총 칙 |
| --- |
| 세 입 세 출 예 산 |

평 창 군

# 예 산 총 칙

1997 년도 [ 본예산 ]

* 제1조 :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회계별 |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일시차입 한도액 |
|---|---|---|---|
| 총계 | | 84,520,768 | 2,535,623 |
| 일반회계 | | 79,453,000 | 2,383,590 |
| 특별회계 | | 5,067,768 | 152,033 |
| | 상수도특별회계 | 3,300,000 | 99,000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646,876 | 19,406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820,473 | 24,614 |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173,739 | 5,212 |
| |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55,000 | 1,650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40,000 | 1,200 |
| |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 31,680 | 950 |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7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8,154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 구분 / 회계별 | 예산액 | 전년도 (기정) 예산액 | 증△감 |
|---|---|---|---|
| 계 | 84,520,768 | 71,821,147 | 12,699,621 |
| 일반회계 | 79,453,000 | 67,993,329 | 11,459,671 |
| 특별회계 | 5,067,768 | 3,827,818 | 1,239,950 |
| 상수도 | 3,300,000 | 1,993,824 | 1,306,176 |
| 주택사업 | 646,876 | 719,438 | -72,562 |
| 의료보호기금 | 820,473 | 617,301 | 203,172 |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 173,739 | 313,755 | -140,016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 55,000 | 50,000 | 5,000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40,000 | 40,000 | 0 |
| 주차장 설치및관리 | 31,680 | 93,500 | -61,820 |
| | 0 | 0 | 0 |
| | 0 | 0 | 0 |

# 세 입 세 출 예 산 총 괄 표

<경제성질별>

(단위 : 천원)

| 구분 |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감 |
| 세입 | 계 | 84,520,768 | 100% | 71,821,147 | 100% | 12,699,621 | 79,453,000 | 100% | 67,993,329 | 100% | 11,459,671 | 5,067,768 | 100% | 3,827,818 | 100% | 1,239,950 |
| | 지방세 | 9,950,704 | 12% | 8,424,046 | 12% | 1,526,658 | 9,950,704 | 13% | 8,424,046 | 12% | 1,526,658 | 0 | 0% | 0 | 0% | 0 |
| | 세외수입 | 13,329,862 | 16% | 9,802,644 | 14% | 3,527,218 | 10,078,142 | 13% | 6,838,119 | 10% | 3,240,023 | 3,251,720 | 64% | 2,964,525 | 77% | 287,195 |
| | 경상적세외수입 | 6,457,130 | 8% | 6,051,848 | 8% | 405,282 | 5,131,219 | 6% | 4,835,771 | 7% | 295,448 | 1,325,911 | 26% | 1,216,077 | 32% | 109,834 |
| | 임시적세외수입 | 6,872,732 | 8% | 3,750,796 | 5% | 3,121,936 | 4,946,923 | 6% | 2,002,348 | 3% | 2,944,575 | 1,925,809 | 38% | 1,748,448 | 46% | 177,361 |
| | 지방교부세 | 29,945,000 | 35% | 28,517,000 | 40% | 1,428,000 | 29,945,000 | 38% | 28,517,000 | 42% | 1,428,000 | 0 | 0% | 0 | 0% | 0 |
| | 지방양여금 | 5,027,000 | 6% | 4,819,000 | 7% | 208,000 | 5,027,000 | 6% | 4,819,000 | 7% | 208,000 | 0 | 0% | 0 | 0% | 0 |
| | 보조금 | 25,268,202 | 30% | 20,258,457 | 28% | 5,009,745 | 24,452,154 | 31% | 19,395,164 | 29% | 5,056,990 | 816,048 | 16% | 863,293 | 23% | -47,245 |
| | 국고보조금 | 19,481,923 | 23% | 10,513,264 | 15% | 8,968,659 | 18,835,971 | 24% | 9,779,516 | 14% | 9,056,455 | 645,952 | 13% | 733,748 | 19% | -87,796 |
| | 도비보조금 | 5,786,279 | 7% | 9,745,193 | 14% | -3,958,914 | 5,616,183 | 7% | 9,615,648 | 14% | -3,999,465 | 170,096 | 3% | 129,545 | 3% | 40,551 |
| | 지방채 | 1,000,000 | 1% | 0 | 0% | 1,000,000 | 0 | 0% | 0 | 0% | 0 | 1,000,000 | 20% | 0 | 0% | 1,000,000 |
| 세출 | 계 | 84,520,768 | 100% | 71,821,147 | 100% | 12,699,621 | 79,453,000 | 100% | 67,993,329 | 100% | 11,459,671 | 5,067,768 | 100% | 3,827,818 | 100% | 1,239,950 |
| | 인건비 | 12,859,793 | 15% | 11,139,686 | 16% | 1,720,107 | 12,843,727 | 16% | 11,125,338 | 16% | 1,718,389 | 16,066 | 0% | 14,348 | 0% | 1,718 |
| | 물건비 | 11,140,942 | 13% | 9,492,033 | 13% | 1,648,909 | 10,074,093 | 13% | 8,663,372 | 13% | 1,410,721 | 1,066,849 | 21% | 828,661 | 22% | 238,188 |
| | 이전경비 | 7,312,396 | 9% | 6,187,312 | 9% | 1,125,084 | 6,602,569 | 8% | 5,509,116 | 8% | 1,093,453 | 709,827 | 14% | 678,196 | 18% | 31,631 |
| | 자본지출 | 49,919,253 | 59% | 41,755,820 | 58% | 8,163,433 | 47,260,109 | 59% | 40,123,940 | 59% | 7,136,169 | 2,659,144 | 52% | 1,631,880 | 43% | 1,027,264 |
| | 융자및출자 | 186,300 | 0% | 318,129 | 0% | -131,829 | 0 | 0% | 0 | 0% | 0 | 186,300 | 4% | 318,129 | 8% | -131,829 |
| | 보전재원 | 911,306 | 1% | 833,455 | 1% | 77,851 | 557,051 | 1% | 527,051 | 1% | 30,000 | 354,255 | 7% | 306,404 | 8% | 47,851 |
| | 내부거래 | 947,297 | 1% | 1,169,695 | 2% | -222,398 | 947,297 | 1% | 1,169,695 | 2% | -222,398 | 0 | 0% | 0 | 0% | 0 |
| | 예비비및기타 | 1,243,481 | 1% | 925,017 | 1% | 318,464 | 1,168,154 | 1% | 874,817 | 1% | 293,337 | 75,327 | 1% | 50,200 | 1% | 25,127 |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세항별>

(단위 : 천원)

| 구분 | 합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
|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 Δ 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 Δ 감 | 예산액 | 구성비율(%) | 전년도(기정)예산액 | 구성비율(%) | 증 Δ 감 |
| 계 | 84,520,768 | 100% | 71,821,147 | 100% | 12,699,621 | 79,453,000 | 100% | 67,993,329 | 100% | 11,459,671 | 5,067,768 | 100% | 3,827,818 | 100% | 1,239,950 |
| 경상예산 | 25,647,333 | 30% | 21,808,662 | 30% | 3,838,671 | 25,367,512 | 32% | 21,568,288 | 32% | 3,799,224 | 279,821 | 6% | 240,374 | 6% | 39,447 |
| 인건비 | 12,859,793 | 15% | 11,082,912 | 15% | 1,776,881 | 12,843,727 | 16% | 11,068,564 | 16% | 1,775,163 | 16,066 | 0% | 14,348 | 0% | 1,718 |
| 관서운영비 | 605,700 | 1% | 611,298 | 1% | -5,598 | 605,700 | 1% | 611,298 | 1% | -5,598 | 0 | 0% | 0 | 0% | 0 |
| 경상적경비 | 12,181,840 | 14% | 10,114,452 | 14% | 2,067,388 | 11,918,085 | 15% | 9,888,426 | 15% | 2,029,659 | 263,755 | 5% | 226,026 | 6% | 37,729 |
| 사업예산 | 55,835,700 | 66% | 47,407,029 | 66% | 8,428,671 | 52,187,162 | 66% | 44,854,385 | 66% | 7,332,777 | 3,648,538 | 72% | 2,552,644 | 67% | 1,095,894 |
| 국고보조사업 | 29,508,252 | 35% | 17,403,884 | 24% | 12,104,368 | 28,700,812 | 36% | 16,799,199 | 25% | 11,901,613 | 807,440 | 16% | 604,685 | 16% | 202,755 |
| 지방양여금사업 | 6,821,000 | 8% | 6,552,910 | 9% | 268,090 | 6,821,000 | 9% | 6,552,910 | 10% | 268,090 | 0 | 0% | 0 | 0% | 0 |
| 시.도비보조사업 | 3,693,464 | 4% | 11,250,706 | 16% | -7,557,242 | 3,688,664 | 5% | 11,245,906 | 17% | -7,557,242 | 4,800 | 0% | 4,800 | 0% | 0 |
| 자체사업 | 15,812,984 | 19% | 12,199,529 | 17% | 3,613,455 | 12,976,686 | 16% | 10,256,370 | 15% | 2,720,316 | 2,836,298 | 56% | 1,943,159 | 51% | 893,139 |
| 채무상환 | 1,794,254 | 2% | 1,680,439 | 2% | 113,815 | 730,172 | 1% | 695,839 | 1% | 34,333 | 1,064,082 | 21% | 984,600 | 26% | 79,482 |
| 지방채상환 | 1,794,254 | 2% | 1,680,439 | 2% | 113,815 | 730,172 | 1% | 695,839 | 1% | 34,333 | 1,064,082 | 21% | 984,600 | 26% | 79,482 |
| 채무부담행위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예비비등 | 1,243,481 | 1% | 925,017 | 1% | 318,464 | 1,168,154 | 1% | 874,817 | 1% | 293,337 | 75,327 | 1% | 50,200 | 1% | 25,127 |
| 예비비 | 1,243,281 | 1% | 925,017 | 1% | 318,264 | 1,168,154 | 1% | 874,817 | 1% | 293,337 | 75,127 | 1% | 50,200 | 1% | 24,927 |
| 기타 | 200 | 0% | 0 | 0% | 200 | 0 | 0% | 0 | 0% | 0 | 200 | 0% | 0 | 0% | 200 |

출

#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109 |
|---|---|

제출년월일 : 1996.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거 가격결정하던 것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의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10 ~ 15명 이내로 한다.(안 제3조 제1항)

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한다.(안 제3조 제2항)

#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1인이상 15인"을 "10인이상 15인"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br>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br>1 ~ 3.(생략)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이 된다.<br>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br>1 ~ 3.(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①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114 |
|---|---|

제출년월일 : 1996.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 차량의 급진적인 증가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을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조정함.(안 제14조)

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가 가능한 곳을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함.(안 제15조)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준농림지역안에서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을 완화해 줌.(안 별표5, 별표6)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2호중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을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의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시행령 제8조제3항의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최소규모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5],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 시설물 | | 설치기준 |
|---|---|---|
| 숙박시설 |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선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운동시설 | 골프장 | 1홀당 10대 |
|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 | 옥외수영장 | 정원15인당 1대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관람집회시설 | 운동경기관람장 | 수용인원 100인당 1대 |
| | 예식장 | 시설면적 50㎡당 1대 |
|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센타 | 시설면적 80㎡당 1대 |
|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 유흥음식점 | 시설면적 50㎡당 1대 |
|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업무시설, 종교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 | 시설면적 150㎡당 1대 |
| 근린생활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 |
| 단독주택 | |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비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칵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3조 제2항 관련)

| 시설물 | | | 설치기준 |
|---|---|---|---|
| 숙박시설 |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 |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
| | 기타 | | 시설면적 200㎡당 1대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선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
| | 기타 | | 시설면적 200㎡당 1대 |
| 운동시설 | 골프장 | | 1홀당 10대 |
| | 골프연습장 | | 1타석당 1대 |
| | 옥외수영장 | | 정원15인당 1대 |
| | 기타 | | 시설면적 200㎡당 1대 |
| 관람집회시설 | 운동경기관람장 | | 수용인원 100인당 1대 |
| | 예식장 | | 시설면적 67㎡당 1대 |
| | 기타 | | 시설면적 133㎡당 1대 |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센타 | | 시설면적 107㎡당 1대 |
| | 기타 | | 시설면적 133㎡당 1대 |
|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 | 유흥음식점 | 시설면적 67㎡당 1대 |
| | | 기타 | 시설면적 133㎡당 1대 |
| 업무시설, 종교시설 | | | 시설면적 133㎡당 1대 |
|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 | | 시설면적 200㎡당 1대 |
| 근린생활시설 | | | 시설면적 267㎡당 1대 |
| 단독주택 | | | 건축연면적 173㎡초과 267㎡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67㎡초과의 경우는 1대에 267㎡를 초과하는 173㎡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등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400㎡당 1대 |

비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73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7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73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칵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를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략)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략) |
| ②(본문생략) 1.(생략) | ②(본문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
| 2.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 2.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
| ③~④(생략) | ③~④(현행과 같음) |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생략) |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현행과 같음) |
| ②영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지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 | ②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 |
| 제14조(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완화) 영 제2조제2항의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4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건폐율 : 100분의 80이하 |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
| 2. 용적율 : 1300%이하 |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0제곱미터이상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4. 높이제한<br>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br>가. 대지가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br>나. 대지가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배(단서신설) |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br>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br>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다. |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br>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br>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해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로 한다. |
| 설> | 제15조의5(시설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시행령 제8조제3항의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최소규모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12㎡이상이어야 한다. |

# 관계법령발췌서

##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수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하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설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노외주차장사용권을 승계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비용의 산정기준 및 시설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법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 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는 1.8배로 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 ·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2. 공원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저상매표소, 저상음료대, 장애인전용변소, 장애인전용관람석, 장애인전용주차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시각장애인용 신호종
3. 공공건물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전용 변소,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승강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
4. 교통시설 : 음향신호기, 장애인승차대, 저상매표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안내표시
5. 통신시설 : 장야인전용공중전화
6. 공동주택 : 평탄한 출입구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변소
7. 기타 공중이용시설 : 평탄한 통로 또는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변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 평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의 안 번 호 | 113 |
|---|---|

제출년원일 : 1996.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나.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 2. 주요골자

가. 보건관련시설 신·증·개축

- ○ 보건의료원 증·개축
- ○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개축
- ○ 보건진료소 개축

나. 의료장비 보강

## 3. 관련근거법령

○ 지역보건법(1996. 7. 1 시행)

# 지역보건의료계획

- ㅇ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 지역자치단체작성 ↔ 중앙정부조정 ⇒ 하의상달 방식
- ㅇ 보건관련기관, 단체 계획수립 참여
- ㅇ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주기 수립

## □ 관련근거

ㅇ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계획수립 및 의회의결

## □ 추진일정

ㅇ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96. 11. 1 ~11. 23 완료

ㅇ 사업예고(공고 2주) : '96. 11. 22 ~ 12. 3(읍면게시공고)

ㅇ 의회 의결 : '96. 12월 정기의회 개원

ㅇ 강원도 계획제출 : '96. 12월말

## □ 의료계획 내용 ['97. ~ 2000까지 4개년간]

ㅇ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

ㅇ 지역현황과 전망

ㅇ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ㅇ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 국비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 년도 | 사업명 | 사업비 |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중앙교부금 | 도비 | 군비 | |
| 합계 | 22건 | 3,567,674 | 2,174,447 | 1,087,227 | | 306,000 | |
| 소계 | 5건 | 926,298 | 581,865 | 290,933 | | 53,500 | |
| 1997 | . 보건의료원 증축 | 350,658 | 233,772 | 116,886 | | | |
| | . 입원실 개보수 | 77,500 | 46,667 | 23,333 | | 7,500 | |
| | . 앰브란스 교체 | 20,000 | | | | 20,000 | |
| | . 장비보강 | 137,500 | 74,333 | 37,167 | | 26,000 | |
| | . 진무보건지소 이전신축 | 340,640 | 227,093 | 113,547 | | | |
| 소계 | 6건 | 640,526 | 328,350 | 164,176 | | 148,000 | |
| 1998 | . 대화보건지소 개축 | 340,640 | 227,093 | 113,547 | | | |
| | . 한방진료개설 | 55,000 | 23,333 | 11,667 | | 20,000 | |
| | . X-ray촬영기 | 30,000 | | | | 30,000 | |
| | . 건강체크 장비구입 | 38,000 | | | | 38,000 | |
| | . 의료원 보일러 | 60,000 | | | | 60,000 | |
| | . 계촌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소계 | 5건 | 825,912 | 516,274 | 258,138 | | 51,500 | |
| 1999 | . 봉평보건지소 이전신축 | 340,640 | 227,093 | 113,547 | | | |
| | . 두일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 . 면온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 . CT촬영기 구입 | 250,000 | 133,333 | 66,667 | | 50,000 | |
| | . 물리치료장비 | 1,500 | | | | 1,500 | |
| 소계 | 6건 | 1,174,938 | 747,958 | 373,980 | | 53,000 | |
| 2000 | . 미탄보건지소 개축 | 340,640 | 227,093 | 113,547 | | | |
| | . 방림보건지소 개축 | 340,640 | 227,093 | 113,547 | | | |
| | . 다수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 . 마지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 . 신리보건진료소 개축 | 116,886 | 77,924 | 38,962 | | | |
| | . 장비구입 | 143,000 | 60,000 | 30,000 | | 53,000 | |

□ 사업총괄

(단위 천원)

| 추진년도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비 | 비 고 |
|---|---|---|---|---|
| 합 계 | 23건 | | 3,567,674 | |
| 소 계 | 5건 | | 926,298 | |
| 1997년 | ○ 보건의료원 증축 | 105평 | 350,658 | |
| | ○ 입원실 개보수 | 70평 | 77,500 | |
| | ○ 앰브란스 교체 | 1대 | 20,000 | |
| | ○ 장비보강 | | | |
| | - 의료원 | | | |
| | . 생화학분석기외 2종 | 3대 | 93,000 | |
| | - 보건지소 | | | |
| | . 고압멸균기 외 3종 | 23대 | 44,500 | |
| | ○ 진부보건지소 이전신축 | 1동 102평 | 340,640 | 지상2층 |
| 소 계 | 7건 | | 640,526 | |
| 1998년 | ○ 대화보건지소 개축 | 1동 102평 | 340,640 | 지상2층 |
| | ○ 한방진료 개설 | | | |
| | - 장비구입 | | | |
| | . 맥진기외 6종 | 7대 | 55,000 | |
| | ○ 장비보강 | | | |
| | - X-Ray직촬기 | 1대 | 30,000 | |
| | ○ 건강체크 장비구입 | | | |
| | - 전신안마기 외 5종 | 6대 | 38,000 | |
| | ○ 3차의료기관과 원격 화상진료 실시 | | | |
| | ○ 의료원 보일러교체 | 1식 | 60,000 | |
| | ○ 계촌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소 계 | 5건 | | 825,912 | |
| 1999년 | ○ 봉평보건지소 이전신축 | 1동 102평 | 340,640 | 지상2층 |
| | ○ 두일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 ○ 면온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 ○ 의료원 장비구입 | | | |
| | - CT촬영기 | 1대 | 250,000 | |
| | ○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 | | |
| | - 고정형실내자전거외1 | 2대 | 1,500 | |
| 소 계 | 6건 | | 1,174,938 | |
| 2000년 | ○ 미탄보건지소 개축 | 1동 102평 | 340,640 | 지상2층 |
| | ○ 방림보건지소 개축 | 1동 102평 | 340,640 | 지상2층 |
| | ○ 다수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 ○ 마지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 ○ 신리보건진료소 개축 | 1동 35평 | 116,886 | |
| | ○ 노후장비 교체 | | | |
| | - 의료원 | | | |
| | . 초음파 진단기외 5종 | 6대 | 113,000 | |
| | - 보건지소 | | | |
| | . 치과유니트 | 3대 | 30,000 | |

□ '97년도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계획

○ 보건의료원 증축

- 규 모 : 2층 옥상 105평
- 용 도 :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격리병실등 사용
- 사업비 : 350,658천원

○ 입원실 개보수

- 병상수 : 30병상(70평)
- 내 용 : 내부수리 및 병상개조
  환자보호자 대기용침대 설치 10개
  TV 및 소형냉장고 설치 각 10대
- 사업비 : 77,500천원

○ 앰브란스 교체

- 대 상 : 1대
- 구입비 : 20,000천원

○ 장비보강

- 의료원
  . 생화학분석기 1대 ⇒ 80,000천원
  . 자동약포장기 1대 ⇒ 7,000천원
  . 트랙션 1대 ⇒ 6,000천원

- 보건지소
  . 고압멸균기 7개소 각1대 ⇒ 24,500천원
  . 방문진료세트 7개소 각 2세트 ⇒ 7,000천원
  . 치과유니트 1대 ⇒ 10,000천원
  . 치과 콤프레서 ⇒ 3,000천원

○ 진부보건지소 이전신축

- 위 치 : 재무과와 협의 추후결정
- 규 모 : 47.35평 ⇒ 102평 (지상2층)
- 사업비 : 340,640천원

□ '98년도 추진계획 사업

○ 대화보건지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73-7
- 규 모 : 64.8평 ⇒ 102평 (지상2층)
- 사업비 : 340,640천원

○ 한방진료 추진

- 한의사 공보의 배치 건의
- 의료원 3층 증축 확정시 진료확대
- 장비확보
  . 맥진기 1대 ⇒ 5,000천원
  . 양도락 1대 ⇒ 1,000천원
  . 혈류초음파진단기 1대 ⇒ 35,000천원
  . 레이저침 1대 ⇒ 7,000천원
  . 전자침치료기 1대 ⇒ 1,500천원
  . 전침기 1대 ⇒ 500천원
  . 약포장기 1대 ⇒ 5,000천원

○ 의료장비 구입

- 장비명 : X-Ray직촬기 1대
- 구입액 : 30,000천원

○ 두일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137
- 규　모 : 22.35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면온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99-3
- 규　모 : 22.35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장비구입

- CT촬영기 ⇒ 250,000천원

○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 족관절 배골운동기 ⇒ 1,000천원
- 고정형 실내자전거 ⇒ 500천원

□ 2000년도 추진계획 사업

○ 미탄보건지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미탄면 창리 617
- 규　모 : 50.71평 ⇒ 102평 (지상2층)
- 사업비 : 340,640천원

○ 방림보건지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287-3
- 규　모 : 50.71평 ⇒ 102평 (지상2층)
- 사업비 : 340,640천원

○ 민원실 건강체크 장비구입

-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1대 ⇒ 8,000천원
- 폐활량 자동측정기 1대 ⇒ 7,000천원
- 혈압.맥박 자동측정기 1대 ⇒ 8,000천원
- 전신반응 자동측정기 1대 ⇒ 5,000천원
- 발 안마기 1대 ⇒ 5,000천원
- 전신 안마기 1대 ⇒ 5,000천원

○ 3차의료기관과 원격 화상진료

- '9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계획
- 지침시달후 실시(원주기독교병원과 실시 계획)

○ 의료원 보일러 교체 1식 ⇒ 60,000천원

○ 계촌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496-3
- 규 모 : 22.35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99년도 추진계획 사업

○ 봉평보건지소 이전신축

- 위 치 : 재무과와 협의 추후결정
- 규 모 : 47.35평 ⇒ 102평 (지상2층)
- 사업비 : 340,640천원

○ 다수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335
- 규　모 : 22.35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마지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666-1
- 규　모 : 22.35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신리보건진료소 개축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신리 278-12
- 규　모 : 21.29평 ⇒ 35평
- 사업비 : 116,886천원

○ 노후장비 교체

- 의 료 원
  . 초음파진단기 1대 ⇒ 30,000천원
  . 방사선 자동현상기 1대 ⇒ 20,000천원
  . 치과유니트 1대 ⇒ 10,000천원
  . 쿨러카운터(혈구자동계산기) 1대 ⇒ 30,000천원
  . 전해질분석기 1대 ⇒ 20,000천원
  . 원심분리기 1대 ⇒ 3,000천원
- 보건지소
  . 치과유니트 3대 ⇒ 30,000천원